



북한 수용소의 강제 노동

(국문판은 간추림판입니다.)

노마 강 뮤코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



감사의 말

이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인터뷰에 응해주시고, 아픈 경험을 우리에게 나누어 준 많은 용기 있는 북한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이 보고서를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위기감시기구(International Crisis Group), 김수암, 김윤정, 김태진, 마이크 케이(Mike Kaye), 바스피아, 북한인권시민연합, 앰네스티 인터내셔널(Amnesty International), 영국 세이브 더 칠드런(Save the Children UK), 인권운동사랑방, 좋은 벗들, 최순호, 통일부, 통일연구원, 팀 피터스(Tim Peters), 허예진, 황선영 그리고 휴먼라이츠와치(Human Rights Watch) (이상 가나다 순)가 주신 도움과 협조에 감사 드립니다.

이 보고서가 나오기까지의 모든 연구와 조사, 그리고 관련 활동은 러포드 모리스 랭 재단(The Rufford Maurice Laing Foundation)에서 지원하였습니다.

번역: 장하경

교정: 황선영

목차	페이지
1. 배경	1
2. 월경	3
3. 중국에서의 생존	7
일자리	7
농촌 신부	7
4. 강제 송환	10
공안 단속	10
추방	14
5. 송환에 따른 처벌	15
국가 보위부	16
예심	18
수감 환경	25
기다림	26
6. 북한 수용소의 강제 노동	27
노동단련대	27
강제 노동	28
임신한 수감자	34
교화	36
수감 환경	36
음식	38
의료	39
도집결소	40
강제 노동	41
수감 환경	44
인민보안성	45
정식 재판	45
비공식 선고	47
무판결 석방	47
임의적 판결	49
교화소	50
강제 노동	51
음식	52
의료	52
7. 다시 중국으로	53
중국으로 돌아가는 이유	53
재 체포의 두려움	55
현장 난민	57
8. 결론	58
9. 인터뷰 대상자 신상 및 추방/수감 횟수	60

1. 배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은 농업 생산에 적합하지 않은 산악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1950-1953) 이후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은 자급자족을 국가 안보에 결정적인 것으로 여기고, 화학 비료, 농약, 관개용 전기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에너지 집약적 농업 방식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농업 방식은 냉전 동맹국들의 지원을 받은 수입 물자에 의존해서만 유지될 수 있었다.

소비에트 연방(구 소련)의 붕괴, 그리고 1990년대 초반 한국과 구소련 및 중국의 외교 관계 수립은 북한에 대한 동맹 국가들의 우대 무역과 에너지 지원의 종료를 알리는 신호였다. 그 결과로 인한 농업 생산량의 급감은, 연이은 자연 재해¹, 1995년 국영 식량 배급 체계 (Public Distribution System, PDS)를 통한 일일 식량 배급의 붕괴와 더불어, 북한에 광범위한 기근을 촉발시켰다.

1995년 북한 정부는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위기를 인정했다. 한편, 북한 정부는 주민들에게 뿌리, 풀, 줄기, 나무껍질과 같은 대체 식량원을 찾도록 적극 독려했는데, 그것들은 영양가가 거의 없고, 특히 어린이와 노인들에게 심각한 소화 장애를 일으키는 것들이었다. 1996년 대체 식량은 북한 주민들의 전체 식량의 약 30%에 달했다.²

기근은 수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식량과 일자리를 찾아 이웃한 중국으로 탈출하도록

¹ 1995년 북한은 폭우와 홍수로 피해를 입었으며, 1990년에는 대홍수, 1993년 겨울에는 혹한, 1994년에는 우박으로 타격을 입은 바 있다.

² Andrew S. Natsios, *The Great North Korean Famine: Famine Politics, and Foreign Policy* (북한 대기근: 기근 정치와 외교 정책), USIP, 2002, p.81; FAO & WFP, *Special Report: FAO/WFP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특별 보고서: FAO/WFP 대 북한 곡물 및 식량 공급 평가단) 1996년 12월, p.93.

촉발시켰다. 계속되는 식량 및 경제 위기는 허가 받지 않은 여행을 감행하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가해짐에도 불구하고 이주의 물결이 계속되는 결과를 낳았다.³

중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의 수는 출처마다 다르지만, 최소 5만 명의 탈북자들이 중국에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⁴ 대다수는 국경 지역인 길림, 요녕, 흑룡강의 조선족 마을에 정착하지만, 최근의 정보에 따르면 점점 더 많은 탈북자들이 중국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⁵ 탈북자의 대다수는 여성인데, 이는 중국 농촌 지역에서 신부⁶감으로서 여성의 수요가 높고, 가정부, 유모, 간병인, 청소부 등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에 연고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탈북자들-여성, 남성, 아동-은 중국 당국에 발각되면, 체포되어 북한으로 송환된다.

이 보고서는 최근 북한 주민들이 중국으로 대규모 탈북하는 현상, 그리고 체포된 적이 있는 경우 북한의 수용소에서 경험한 강제 노동과 기타 인권 침해에 초점을 맞춘다. 이 보고서에서 ‘수용소(prison camp)’라는 용어는 수감자가 강제노동에 처해지는 북한의 모든 구금시설을 지칭하며, 노동단련대, 도 집결소, 교화소, 관리소(정치범 수용소)를 포함한다. 관리소로 보내지는 탈북자는 많지 않기 때문에, 관리소는 이 보고서에서 상세하게 다루지 않는다.⁷

³ 허가 없이 북한을 떠나는 것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5장에서 더 상세하게 다루어진다.

⁴ 중국에 있는 탈북자 수의 추정 범위에 대해서는 ICG(국제위기그룹), *Perilous Journey: The plight of North Koreans in China and beyond*(위험한 여행: 중국 및 기타 지역의 탈북자들의 참상), 2006년 10월 26일, p.10. 참조.

⁵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Anti-Slavery International)과 한국 NGO와의 인터뷰, 2007년 1월 30일.

⁶ 중국은 1자녀 정책과 문화적인 남아선호로 인해 여성이 부족하다. 특히 농촌 지역의 많은 남성들이 신부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Norma Kang Muico, *An Absence of Choice: The sexual exploitation of North Korean women in China*(선택의 부재: 중국 내 북한 여성들의 성 착취), Anti-Slavery International, 2005. 참조.

⁷ 이 사실의 증거로서, Human Rights Watch, *North Korea: Border-crossers harshly punished on return*(북한: 도강자들 송환 후 가혹한 처벌), 2007년 3월; ICG, op. cit., p.3; 통일부(MOU), *국회 국정감사 보고서*, 2006, p.50. 참조.

북한 정부가 북한이 식량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2007년 3월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세계식량계획(WFP)⁸에 원조를 요청한 만큼, 탈북 문제는 그 어느 때 보다 시의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세계식량계획에 따르면 북한에서 충분한 식량을 확보하는 것은 “3분의 1에서 절반에 달하는 북한 주민이 여전히 겪고 있는 일상적 고통”⁹이다. 지난 12년 간의 식량 부족과 경제적 고통이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만큼 중국으로의 탈북 역시 계속될 것이다.

보고서 작성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Anti-Slavery International)은 30명의 탈북자들을 인터뷰했으며, 그들 모두 월경죄로 붙잡혀 북한에 수감된 적이 있다. 이들 중 대다수가 2003년 이후 수감되었다. 인터뷰는 중국 길림성의 연길시, 왕청현, 안도현(2007년 1월), 그리고 대한민국 서울(2005년 2월 - 2007년)에서 이루어졌다.

인터뷰 대상자의 대다수가 함경북도 북동부 지역 출신의 여성들이라는 것을 염두해 두고 보고서의 내용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 여성들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름과 인적 사항 일부는 밝히지 않았다.

2. 월경

체류기간을 막론하고, 중국을 향한 탈북자들의 물결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계속되었다. 탈북자들의 대다수는 정치적 압력을 피해서가 아니라, 자국의 식량 부족과 경제 붕괴 때문에 중국으로 향했다. 통일부의 조사에 따르면, 2003년에서 2006년 사이에 중국으로 탈북했던 “새터민”(현재 남한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60% 이상이 경제적

⁸ 세계식량계획(WFP)의 지역 담당자 Tony Banbury는 북한이 매년 2300만의 주민에게 공급해야 할 식량의 20%, 즉 백만 톤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North Korean Admits Food Shortages(북한, 식량 부족 시인)”, BBC News, 2007년 3월 28일. 참고.

⁹ “WFP 평양 담당자, 북한의 식량 위기 경고”, 연합뉴스, 2007년 3월 29일.

어려움 때문에 탈북을 결심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⁰ (표 1)

표 1 : 북한을 떠난 이유, 2003년에서 2006년 6월까지

구분	생활고	처벌우려	체제불만	가족동반	중국정착	가정불화	기타	계
'03	774	80	123	194	46	53	11	1,281
'04	1,125	104	156	401	12	87	9	1,894
'05	849	81	96	308	7	36	6	1,383
'06.6	543	39	19	208	4	24	17	854
계	3,291	304	394	1,111	69	200	43	5,412

출처: 통일부 사회문화교류본부, 2006

통일부의 조사 결과와 유사하게 이 보고서에서 인터뷰한 탈북자의 93%가 그들이 북한을 떠나도록 몰아부친 주요 요인으로 식량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을 언급했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식량공급체계의 붕괴로 인한 굶주림과 식량 부족, 그리고 공장 폐쇄로 인한 일자리 상실의 비슷한 경험들을 공유하고 있었다. 인터뷰 대상자 중 많은 수가 질병, 죽음, 가족 해체로 인해 가중된 고통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다른 수만 명의 탈북자들과 마찬가지로 안티슬레이버리가 인터뷰한 탈북자들도 생존을 목적으로 중국으로 갔다. 중국은 그들 자신의 생존뿐만 아니라 아직 북한에 살고 있는 가족들의 생존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1990년대 말 북한의 식량 사정이 기근에서 식량난으로 호전되었을 때조차도, 북한의 식량 상황은 너무도 심각하여 중국으로의 이주가 계속되었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두만강을 통해 중국으로 간다. 두만강은 북한과 중국이 맞닿은

¹⁰ 통일부, op. cit., p.50.

1300km의 국경 중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자연적 국경으로, 중국의 길림성과 북한의 함경북도 및 양강도를 가른다. 강의 일부는 수위가 얇고 폭이 좁아 비교적 쉽고 재빠른 도강을 가능하게 한다. 북한 주민들은 날씨가 따뜻할 때 강을 헤엄을 쳐서 건너거나 강이 얼어붙을 때 그 위를 걸어서 간다.

1990년대 후반 식량 및 경제 위기가 고조되었을 때, 중국으로의 대규모 탈북이 발생했다. 기근이 닥치자 중국과 북한 당국 모두 도강을 용인했다. 실제로 1999년 북한 당국은 도강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기 시작했으며,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게 생존을 목적으로 중국으로 간 단순 도강자들과 보다 정치적인 동기에 의한(예, 남한 사람들 및 기독교인들과 접촉한, 혹은 남한으로 가는 경로에서 붙잡힌) 도강자들을 명확히 구분하여 처벌하였다.¹¹ 일반적으로 단순 도강자들이 노동단련대 또는 교화소로 보내지는 반면, 후자는 관리소(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된다.

2000년대 초 식량 상황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의 이주가 계속되었을 때, 중국과 북한 정부는 계속되는 탈북 행렬을 억제하려는 시도로 새로운 정책들을 도입했다. 서울에 본부를 둔 인도주의 구호단체인 좋은벗들은 현재 양쪽 국경에 겹겹의 검문소가 있으며, 무장한 변방대원들이 삼엄한 순찰을 한다고 말했다.¹² 2006년 10월, 중국은 단둥 북쪽에 중국과 북한의 국경을 따라 20km 이상의 가시 철책과 콘크리트 장벽을 세웠다.¹³ 이후 2006년 11월과 12월 길림성 연길시 공안은 북한 주민들을 숨겨주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가정들에 불시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¹⁴

¹¹ 1999년 개정된 북한의 형법은 47조와 117조에서 두 집단을 명확히 구분한다(4장에서 논의). 통일연구원(KINU), 북한인권백서, 2006, p.283-4. 참조.

¹² 좋은벗들과의 인터뷰, 2007년 2월 8일.

¹³ “China erects barbed wire fence along border with North Korea(중국, 북한 국경을 따라 철책 세워)”,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2006년 10월 16일.

¹⁴ Koichi Furuya, “North Koreans Risking All for Greener Pasture in China(북한 주민들, 중국에서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모든 것을 걸어)”, 아사히 신문, 2007년 3월 7일.

북한 역시 이러한 시도로서, 도주 위험이 있는 사람들, 즉, 도강 전력이 있거나 실종자(중국으로 간 것으로 추정된) 가족이 있는 사람들을 엄밀히 감시해 왔다. 감시 활동의 일부로서 당국은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의 이웃을 감시하도록 하며, 경우에 따라 도강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중국까지 가기도 한다. 지속적인 불법 도강을 저지하려는 시도 속에 국경 지역에 살고 있는 도강 전과자들의 가족이 2007년 초 주거지에서 강제 이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¹⁵

단독으로 도강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지난 도강의 경험을 통해, 혹은 중국 상인이나 귀환한 도강자들과 같은 제3자로부터 얻은 정보를 통해 안전한 경로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은 혼자서 그런 위험한 여행을 감행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대신 그들은 길을 알고 있는 안내인, 지인, 친구, 가족 등의 도움을 구한다.

안내 비용은 안내 수준에 따라 200위안(미화 25달러)에서 1000위안(미화 130달러)까지 이를 수 있다.¹⁶ 인터뷰에 따르면 국경 경비대에게 뇌물을 주는 것은 예전처럼 수월하지 않았다. 평양 출신의 27세 남성은 중국에 갔던 첫 번째와 두 번째 시기 사이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난 1999년에는 북한 군인들에게 뇌물을 주기가 쉬웠어요. 그런데 이번 2004년에는 국경 통제가 더 심했고 군인들이 돈을 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결국 나는 국경 경비대원들이 없는 틈을 타 밤에 도강을 해야 했어요.¹⁷

¹⁵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 소식” 58호, 북한연구소, 2007년 2월.

¹⁶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2, 11, 12, 2007년 1월.

¹⁷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15, 2007년 2월 12일.

3. 중국에서의 생존

일자리

도강을 억제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중국으로 여행하는데 따른 가혹한 처벌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장기간 거주하는 탈북자 중에는 남성도 있지만, 절대 다수가 여성이다.¹⁸ 이는 중국에서 북한 남성들이 얻을 수 있는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남성들은 북한으로 돌아오기 전 식량 및 다른 물품들을 조달하기 위해 단기간 머무는 경향이 있다. 장기간 머무는 사람들은 농장, 건설 현장, 광산, 채석장, 공장 등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면서 손에 돈을 쥐려는 사람들이다.¹⁹ 예를 들어 무산 출신의 27세 남성은 온들을 떼어내는 일을 하고 하루에 70위안(미화 9달러)을 받았다.²⁰ 이러한 남성들은 일자리를 찾아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체포되어 송환되지 않기 위해 한 곳에 한 달 이상 머무르지 않는다.

북한 여성들은 가정집의 가정부, 보모, 간병인이나, 청소부, 식당의 조리원이나 설거지 등 눈에 덜 띄는 종류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남성보다 중국에 정착하기가 더 쉽다.

농촌 신부

이 보고서에서 인터뷰한 여성 중 70% 이상이 중국 남성과 결혼했으며, 이들 남성의

¹⁸ 좋은벗들과의 인터뷰, 2007년 2월 8일.

¹⁹ Sarah Buckley, "Escaping North Korea(북한 탈출)", BBC News Online, 2004년 7월 28일, <http://news.bbc.co.uk/1/hi/world/asia-pacific/3932591.stm>

²⁰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5, 2007년 1월 28일.

대부분은 조선족 농부였다. 여성이 부족한 중국에서는 신부들이 웃돈을 원하며, 특히 남자 13명당 여자 10명 꼴인 중국의 농촌 지역은 설상가상으로, 신붓감이 될 만한 중국 여성 다수가 경제적으로 보다 안정된 도시 출신의 배우자를 선호한다.²¹ 이러한 여성 부족 현상은 결국 중국 여성과 결혼하지 못하는 남성들의 신붓감 수요를 북한 여성들이 채운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성 출신의 63세 여성이 밝힌 것처럼, “북한 여성들은 대개 노령, 장애, 가난 등 뭔가 결점이 있는 중국 남성들과 결혼한다.”²²

인터뷰 대상자 중 중국인과 결혼한 대다수의 북한 여성은 북한에 있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커다란 책임감을 갖고 있었다. 회령 출신의 38세 여성은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녀가 중국으로 가도록 한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말했다.

어머니께서 1990년대에 기아로 세상을 뜨시고 식량 상황이 더욱 악화되자 2003년 5월 처음 중국으로 건너 왔습니다. 나는 결혼을 한 상태였고 딸이 하나 있었어요. 나는 북한에 있는 내 가족에게 책임감을 느꼈어요. 장가 보내야 할 남동생이 둘 있었고 아버지 회갑이 가까워 왔어요. 돈 없이는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죠. 나는 시장에서 일을 했고, 일을 하던 중 장사하는 중국인 동료들을 만났는데, 그가 중국에 가면 돈을 잘 벌 수 있다고 내게 말했어요.”²³

이 38세 여성과 마찬가지로 중국으로 가는 많은 여성들이 일자리를 얻어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일단 중국에 도착하면 돈을 버는 일이 생각했던 것만큼 쉽지

²¹ Melanie Kirkpatrick, “The New Underground Railroad(새로운 지하도)”, The Wall Street Journal, 2006년 5월 12일; Justin McCurry와 Rebecca Allison, “40m Bachelors and No Women...the Birth of a New Problem for China (구혼자 4천만 명, 여성이 없다 ... 중국의 새로운 문제 탄생)”, The Guardian, 2004년 3월 9일.

²²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26, 2007년 1월 29일.

²³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3, 23, 2007년 1월.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의 친척이나 함께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중국에서 사는 것은 위험하며, 남자의 보호를 받는 것이 중국에서 살아 남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해 준다. 그 시점부터 여성들은 중국 남성과 결혼하면 살아가기가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쉽게 확신하게 된다. 그런 다음 보통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지인들의 친척이나 친구에게 소개되고, 결혼이 준비된다. 이러한 결혼에는 돈이 오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²⁴ 이러한 사실혼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북한 여성들의 불법적인 지위에는 변함이 없다. 그들은 다른 탈북자들과 똑같이 체포 및 송환의 위험에 처해진다.

중국인과 결혼한 가정에서 북한 여성들은 가정 생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그들은 일상적인 농사일을 도울 뿐만 아니라, 가족의 경제력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자녀와 의붓자식, 그리고 방치되기 쉬운 노부모 등을 돌본다. 회령 출신의 42세 여성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했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나는 열심히 일했고 남편이 빚에서 벗어나도록 도왔어요. 최근 새 집을 샀어요. 초가 지붕이 아니라 현대식 지붕이에요. 밭을 갈 소도 샀어요. 북한에 있는 아들에게 돈도 보낼 수 있어요. 내 아들도 북한에서 농사를 지어요.²⁵

인터뷰 대상자들 중 다수는 중국에서의 결혼은 생활 환경의 향상을 의미하며,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했고 북한에 있는 가족을 도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중국인 남성과 북한 여성의 결혼은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무국적의 중국계 북한인 자녀들의 수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들의 결혼이 법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 만큼,

²⁴ 북한 여성들이 인신매매되어 결혼하는 사례들도 있다. Norma Kang Muico, op. cit., p.3-5. 참조.

²⁵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16, 2007년 1월 27일.

자녀들은 중국 국적을 부여 받지 못한다.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자녀의 이름을 호구(호적)에 올리는 것이 가능한 하지만 가격이 5000 위안(미화 650 달러)에 달하며, 이는 대부분의 농촌 가정이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아니다. 호구가 없는 상태에서 무국적 자녀들은 돈을 내고 학교에 입학할 수는 있지만, 학력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 인터뷰한 바에 따르면, 일부 지역 당국자들이 500 위안(미화 65 달러)만을 받고 중국계 북한인 자녀들을 아버지의 호구에 올리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⁶

4. 강제 송환

공안 단속

북한 불법 이주자들을 단속하기 위해 중국 당국은 가정집,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인터넷 카페, 교회 집회에 대한 주기적인 검문을 실시해왔다. 이 보고서의 인터뷰 대상자들 중 다수가 공안이 탈북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체포되었으며, 그러한 단속은 중국 주재 외국 공관 등을 통해 망명을 요청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발생한 후에 실시되는 경우가 많았다.²⁷

단속은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국경지역을 순찰하는 중국 변방대가 직접 나서기도 한다. 단속은 주로 공안이 탈북자 한 명을 체포하면, 그를 통해 그 지역에 사는 다른 탈북자들의 소재를 파악하는 식으로 이루어 진다. 청진 출신의 43세 여성은 그녀가 도움을 주었던 두 명의 십대 소년들이 공안의 강요로 그녀를 고발한 뒤

²⁶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1,8,9,11,18,25,27, 2007년 1월.

²⁷ 일례로 2004년 7월 말 468명의 북한 난민이 베트남에서 항공편으로 남한에 입국하였을 때, 이에 항의하여 북한 정부는 남한과 외교 관계를 중단했다. 중국 정부 또한 탈북자들에 대한 공안 단속을 더 자주 실시하고 국경 지역 및 중국 내 외국 공관 지역에 대한 보안을 훨씬 강화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체포되었다.

2005년 12월 10일 저녁, 연길시 공안이 집으로 와서 우리를 체포했어요. 그들은 두 명의 십대 북한 소년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곳을 알아냈어요. 나는 그 소년들을 불쌍하게 여겨서 열흘간 우리와 함께 지내도록 했었거든요. 얼마 후에 소년들은 한 인터넷 카페에서 붙잡혔고 중국 공안은 소년들에게 다른 탈북자들이 숨어 있는 곳을 말하게 했어요.²⁸

유선 출신의 36세 여성은 자신이 어떻게 체포되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했다.

2003년 2월 중국 공안이 우리 마을에 사는 탈북자들을 체포하려고 용정에서 왔어요. 그들은 한 탈북 남성과 그의 딸을 체포했어요. 공안은 그에게 다른 탈북자들이 숨어 있는 곳에 대한 정보를 주면 풀어주겠다고 했어요. 우리 집은 가장 가까운 곳이었고 그래서 그 공안이 우리 집을 가장 먼저 뒤지러 왔어요.²⁹

이러한 정치적 환경에서 도시에 사는 탈북자들은 중국인 이웃에 의해 고발되어 발각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몸을 숨긴 채 감히 아파트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고립은 다른 탈북자들과의 접촉을 간절히 원하게 만든다. 사례 연구의 대부분이 보여주듯, 이러한 접촉은 그 자체가 위험스럽다.

반면 농촌 거주자들은 익명성의 사치를 누리지 못한다. 마을 사람들은 탈북자들이 어디에 사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 온성 출신의 28세 여성은 똑같은 공안에게 세 번이나

²⁸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2, 2007년 1월 22일.

²⁹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18, 2007년 1월 26일.

체포되었다. “마을 사람 모두가 내가 북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단속을 할 때 어디를 뒤져야 할지 공안은 알고 있어요.” 세 번째 체포된 후,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마침내 살던 마을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 거기에 그대로 있는 건 너무 위험했어요. 우리가 거기에 머물렀다면, 공안이 다시 돌아와 우리를 네 번째 체포하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었어요.³⁰

체포되어 송환된 적이 있는 사람들은 한밤중에 나는 소리, 특히 자동차 소리를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안티슬레이버리에 이야기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다음 번에 공안에 붙잡힐 때를 대비한 탈출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다.³¹ 중국으로 다시 온 사람들의 대부분은 계속되는 체포의 두려움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다면 중국에서 그런대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했다.

특정 지역의 공안들이 다른 도시나 국경 지역에서 나오는 공안 단속을 자신들의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탈북 여성들에게 사전에 경고해줌으로써 탈북 여성들을 보호한다는 사실은 흥미롭다.³² 이는 일부 지역 당국자들이 중국인과 북한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호구를 얻도록 허용하는 결정과 같은 맥락이다. 두 가지 조치 모두 탈북자들에 대한 중국 지역 당국자들의 보다 유연한 대응을 의미하며, 탈북자들이 중국의 가족 부양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체포되면 먼저 과출소로 보내진 후, 가장 가까운 변방 구류장으로 이송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변방 구류장은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송환되기 위해 대기하는

³⁰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21, 2007년 1월 29일.

³¹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16, 27, 2007년 1월.

³²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1, 9, 27, 2007년 1월.

곳이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도문 변방 구류장으로 보내지지만, 단둥, 화룡, 훈춘, 용정, 삼하 등에도 변방 구류장이 있다. 구류장에서 공안들은 수감된 탈북자들의 개인 신상을 상세히 기록하며 중국에서의 활동에 대한 일반적인 심문을 한다.

안티슬레이버리가 인터뷰한 사람들 중 대부분이 중국 공안에 의해 구타 당하거나 나쁜 대우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마양 출신의 58세 여성은 도문 변방 구류소에서 제공된 식사가 매우 좋았고, 시설이 새 것이었으며, 난방이 잘 되었다고 평했다.³³ 그 시설은 도문을 통해서 송환되는 탈북자 수가 점점 늘어나는 바람에 중국 당국이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했던 새로운 부속 건물이었다.³⁴ 역시 도문에 구금돼 있었던 경성 출신의 또 다른 30세 여성은 북한으로 송환된 후 중국에서 밥을 더 많이 먹지 않은 것을 무척이나 후회했다고 술회했다.³⁵

탈북자들이 이러한 변방 구류장에 구금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짧다. 그러나 탈북자들이 몸이 너무 허약해서 이송될 수 없거나 또는 더 많은 탈북자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거나 혹은 그들과 중국인이 연루된 재판의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등의 이유로 송환은 지연될 수 있다. 길주 출신의 32세 여성은 2006년 7월 연길의 버스 정류장에서 남한으로 가기 위해 선양 가는 버스에 올라타려다 체포되었다. 그녀는 도문의 변방 구류장으로 이송되었으며 그녀를 도운 중개인이 재판을 받고 유죄를 선고 받을 때까지 한 달 이상 구금되었다. 도문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그녀는 탈북자들이 격주로 송환되는 것을 목격했다.³⁶

³³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24, 2007년 1월 23일.

³⁴ 이금순, 북한 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The Border-Crossing North Koreans: Current situations and future prospects), 통일연구원(KINU), 2006, p.52.

³⁵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11, 2007년 1월 29일.

³⁶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1, 2007년 1월 26일.

추방

중국은 난민의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1951년 난민 지위에 관한 국제 협약(UN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의 가입국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탈북자들을 송환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모든 탈북자들이 난민이 아닌 불법적인 경제적 이주자라고 주장하며, 유엔인권고등판무관(UHCHR)의 접근을 막고 있다. 중국이 체포 및 송환 정책을 엄격히 지키는 것은 1961년 북한과 맺은 양자 협정에 기인한다. 그 협정에 따라 양국은 거주자들의 불법적 도강을 막고 합법적인 여행 증명서가 없는 주민은 누구든 송환할 의무를 가진다.³⁷ 이 협정은 천만 명에서 사천만 명의 중국인들이 대대적인 기근의 결과로 사망했던 대약진기(大躍進期)(1958-1961)에 효력을 발휘했다. 이 기간 동안 많은 조선족들이 국경 넘어 북한에 살고 있는 친척들에게서 도움을 구했다.

30년 후 상황은 역전되어 북한 주민들이 그들의 중국인 이웃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다. 기근이 시작되었을 때, 많은 조선족들이 식량과 일자리를 찾아 자기 나라에서 도망친 탈북자들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기꺼이 도우려 했다. 그러나 그들의 선의는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대부분의 조선족들이 탈북자를 도울 만큼 넉넉하지 못하며, 탈북자들이 중국에 너무 오래 머물러서 자기들에게 피해를 입힌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자들 또한 탈북자를 신고하면 포상을 하고, 그들을 돕다가 들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벌금을 물리거나 체포 함으로써, 한(韓)민족 간에 불화의 씨앗을 뿌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중국 국경을 따라 한국어와 중국어로 쓰여진 표지판은 탈북자들이 기피 대상(personae non grata)임을 적나라하게 상기시켜 준다.

³⁷ 협정은 이후 1986년 8월 12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와 중국 공안부가 서명한 ‘국경지역의 국가안전 및 사회질서 유지 업무를 위한 상호협력 의정서’에 의해 강화되었다. 이 문서는 2002년 일본의 비정부기구(NGO) 북한민중 구조 긴급행동 네트워크(RENK)에 의해 입수되었다.
<http://www.bekkoame.ne.jp/ro/renk/Protocol.htm>

5. 송환에 따른 처벌

탈북자 강제 송환 논의의 핵심은 개인의 이주의 자유이다. 자신의 나라를 떠나고 돌아올 수 있는 권리는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3 조 b 항에 명시되어있다. 이주의 자유는 또한 북한이 가입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12 조에 의해 보장된다. ICCPR 12 조 2 항은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떠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법은 모든 국민에게 국내, 그리고 국외로의 이동을 위해서 “여행 증명서”를 발급 받을 것을 요구한다.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는 과정은 길고, 터무니없이 비싸며,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으로의 여행을 신청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초청장이 필요한데, 그 과정이 몇 달씩 걸릴 수 있으며, 요금과 뇌물이 미화 300달러까지 이를 수 있다.³⁸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북한 주민은 많지 않으며 따라서 대부분이 체포와 송환의 위험을 무릅쓰고 허가 없는 여행을 감행한다.

2004년 개정된 북한의 형법 62조는 국가의 허가 없이 다른 나라를 여행하는 것을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공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 변절하였거나 비밀을 넘겨준 조국반역행위를 한 경우에는 5 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

³⁸ ICG(국제위기그룹), op. cit., p.10.; 통일연구원, op. cit., p.113.

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³⁹

62조에 의해 도강은 반역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정치적 범죄로 간주되며, 따라서 그 처벌이 특히 가혹하다. 그러나 1999년, 중국으로 가는 모든 사람이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은 아님을 인정하는 정책 변화가 있었고, 그 결과 도강에 대한 처벌은 3년으로 완화되었다. 이는 2004년 형법 개정 시 다시 한번 완화되었고 233조에 명시되어있다.

비법적으로 국경을 넘나든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⁴⁰

주목할 것은 233조에 의해 보다 가벼운 범죄들에 대해 별도의 기관인 노동단련대를 도입했다는 것이다. 이는 교화소를 통한 교화형보다 덜 가혹한 제도이다.

국가보위부

이러한 처벌 완화에도 불구하고 강제 송환은 도강죄로 체포된 사람들에게 여전히 극도로 가혹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 북한의 형법 체계를 통과하는 험난한 여정은 중국의 국경 구금소로부터 북한의 가장 가까운 국가보위부로 이송되면서 시작된다. 도문 변방 구류소에 구금된 사람들의 경우 도문다리 건너편에 있는 북한 남양에 잠시 머문다. 너무나 많은 도강자들이 도문을 지나기 때문에, 북한 당국자들은 남양에 송환된 탈북자들의 신상을 일차적으로 조사하는 처리소를 세웠다. 그 후 수감자들은 운성에 있는

³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조선일보 통한문제연구소(NK Chosun), 2007년 2월.
http://nk.chosun.com/law/law.html?ACT=detail&law_id=198&mode=list%type=&keyword=&page

⁴⁰ Ibid.

국가보위부로 이송된다.

개인 신상이 다시 기록되고 모욕적인 몸수색이 뒤따른다. 보위원들은 아주 철저하고도 공격적인 몸수색을 실행한다. 왜냐하면 수감자들은 돈을 비닐에 꼭꼭 싼 다음 삼키거나 질이나 항문에 넣는 등, 돈을 숨기기 위해 무엇이든 다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많은 탈북자들이 돈을 숨기는 이유는 구금 기간 동안 음식이나 약을 사기 위해, 또는 (예를 들어 더 나은 대우나 조기 석방을 위해) 간수에게 뇌물을 줄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입소자들이 몸에 돈을 숨겼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들의 옷을 벗기고 손을 머리 뒤로 하거나 한 뒤, 다리를 넓게 벌리고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게 한다. 회령 출신의 47세 여성은 2004년에 네 번째로 체포되었을 때 신의주 국가보위부에서 당한 모욕적인 몸수색을 이렇게 묘사했다.

그들이 첫 번째로 한 일은 우리 몸에 돈이 있나 찾는 거였어요. 여자 보위원이 모든 여자 입소자들을 수색했어요. 그 여자 보위원은 고무 장갑을 끼고 숨긴 돈을 찾기 위해 여자들의 질을 뒤졌어요. 한 사람을 수색한 후에, 장갑 낀 손을 소독 바구니에 담그고 다음 사람을 뒤졌어요.⁴¹

숨긴 돈을 찾기 위해 수감자들의 대변도 뒤지는데, 이 과정은 경우에 따라 설사제가 사용되기도 한다. 돈을 숨긴 것을 들킨 사람, 혹은 숨긴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타를 당한다. 몰수된 돈의 절반은 일반적으로 구금이 끝날 때 수감자에게 돌려준다. 일부 인터뷰 대상자들은 돌려 주지 않은 돈이 구금 시설에서 수감자들에게 식량을 공급할 돈으로 쓰인다고 설명했다.⁴²

⁴¹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14, 2006년 2월 11일.

⁴²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1,7,16,23,28, 2007년 1월.

예심

북한 형법 절차의 중요한 측면은 예심을 사용한다는 것인데, 이는 용의자가 구금돼 있는 동안, 그리고 범죄 사실에 대해 공식적으로 기소되기 전에 이루어진다. 예심은 국가보위부의 보위원들에 의해 실행되며, 그 목적은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여겨지는 범죄 사실 및 세부사항들을 조사하는 것이다. 도강자의 경우에 예심의 목적은 이들에게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내는 것이다. 국가보위부 예심원들에 의해 이들이 순수하게 경제적인 이유로 중국으로 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사건은 인민보안성으로 넘겨진다.⁴³ 이 단계의 구금에는 강제 노동이 존재하지 않는다.

안티슬레이버리가 인터뷰한 탈북자들의 재판 전 구금 기간은 평균 두 달이⁴⁴ 넘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이 국가보위부에서 두 번에서 네 번에 걸친 심문을 받으면서 1주일에서 4주일을 보냈다.⁴⁵ 그러나 1년간 구금된 사례도 있다. 평양 출신의 27세 남성은 2003년 청진의 도 집결소에서 1년간 구금되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한때 고위 당원이었다가 관리소 형에 처해진 사람이라는 이유로 보위원들이 그를 남한으로 가려한 것으로 의심했기 때문이다.⁴⁶

UN 자유권 규약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는 북한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CPR) 준수 여부에 대한 2001년의 최종 견해(Concluding Observation)에서 예심이 수감인의 재판 전 구금 기간을 부당하게 연장시키는 것은

⁴³ 김수암,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 절차와 적용 실태(The North Korean Penal Code, Criminal Procedures, and the Actual Applications), 통일연구원(KINU), 2006, p. 38.

⁴⁴ 이 수치는 출신지의 인민보안성에 보내진 사람들만을 포함한 것이다.

⁴⁵ 노동관련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예심은 기술적으로 열흘 안에 마무리 되어야 하지만, 조사가 두 달까지 연장될 수 있는 경우도 많아서 구금기간은 최대 두 달까지 될 수 있다.

⁴⁶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15, 2007년 2월 12일.

ICCPR 9조 3항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⁴⁷ ICCPR 9조 3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형사상의 죄의 혐의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된 사람은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 받은 기타 관헌에게 신속히 회부되어야 하며, 또한 그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을 받거나 또는 석방될 권리를 가진다.

중국으로의 대규모 탈북이 시작되었을 때, 중국 남성과 결혼한 북한 여성,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문제는 북한 당국자들의 입장에서 당연히 매우 민감한 문제였다. 그전까지 그것은 가혹한 처벌 사유가 되었지만⁴⁸, 오늘날 그것은 거의 문제시 되지 않는다. 인터뷰에 따르면 보위원들은 탈북 여성들, 특히 농촌 지역에 살았던 여성의 경우, 중국인 남성과 결혼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주며, 그러한 결혼이 생존의 한 방안이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송암 출신의 35세 여성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인 남성과 결혼해서 딸을 낳았다고 그들에게 말했어요. 나는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중국에 도착했을 때는 그렇지가 못했어요. 나는 결혼을 해야 했어요. 중국인 남편과 아이가 있는 것은 괜찮지만 남한 사람들을 만나거나 교회에 나가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⁴⁹

사실 보위원들은 탈북자가 언제, 왜 중국으로 갔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특히 남한(사람,

⁴⁷ Concluding Observations of Human Rights Committe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자유권 규약 위원회의 최종 견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CCPR/CO/72/PRK, 2001년 8월 27일, 18절.

⁴⁸ David Hawk, The Hidden Gulag(감춰진 수용소), US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3, p. 56-59. 참조.

⁴⁹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23, 2007년 1월 26일.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또는 교회와 가졌을지 모르는 접촉 등, 중국에서의 일상적 활동에 더 관심이 많다. 온성 출신의 36세 여성은 2005년 셋별시 보위부에서 그러한 문제들에 더해 그녀가 미국인이나 CIA 요원들을 만났는지 여부를 심문 받았다. 심지어 그녀는 외국 언론인들에게 그녀가 경험한 일들을 말한 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질문 받기도 했다.⁵⁰

폭력은 고의적이고 노골적으로 사용되며, 수감자들로부터 정보를 뽑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⁵¹ 보위원들은 수감자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들을 구타한다. 2006년 전직 교환수였던 청진 출신 여성은 그녀가 남한 사람 혹은 교회와의 접촉한 사실을 부인했다는 이유로 보위원들로부터 구타 당했다. 그녀가 증거를 숨기고 있다고 확신하고, 보위원들은 그녀로부터 강제로 자백을 받아 내려 애졌으며 일곱 번이나 그녀를 심문했다.⁵²

또 다른 청진 출신 여성은 그녀가 교회에 간 적이 있다는 사실을 자백할 때까지 보위부 요원들에게 구타를 당했다.

여자 수감자 중 하나가 내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찬송가라는 걸 알아듣고 나를 고발했어요. 그 다음 번 심문에서 보위원들이 내게 교회에 출석하냐고 물었어요. 아니라고 말하자 내 등을 때리고 발로 찼어요. 자백을 하자 더 이상 때리지는 않았지만 자세한 진술을 하라고 요구했어요. 나는 교회에 가는 건 나쁜 일이 아니라고, 북한에 반대하는 행동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⁵⁰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7, 2007년 1월 27일.

⁵¹ 1999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93조에 의해 강제력의 사용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강제력은 사용되고 있다. 동조에는 예심이 수감자에게 자백을 강요할 수 없고 그러한 자백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⁵²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2, 2007년 1월 22일.

교회는 좋은 일을 하는 좋은 곳이라고요.⁵³

인터뷰 대상자들은 또한 국가보위부에서 구타를 당해 수감자들이 구금 기간 중 사망했다고 말했다.⁵⁴ 그러나 많은 인터뷰 대상자들은 또한 심문에 사실대로 혹은 적절하게 대답을 잘 했기 때문에 전혀 구타를 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남자 수감자들이 여성들보다 더 많이 구타를 당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수감자들은 그들이 저지른 행동 또는 잘못 고발된 사항에 대해 끈질기게 그리고 끝까지 부인할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⁵⁵ 예를 들어, 많은 인터뷰 대상자들은 중국에서 교회와 어느 정도 접촉을 가졌지만(교회가 탈북자들을 돕는데 적극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심문 과정에서 그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도강자들이 중국인과의 결혼과 같은 가벼운 ‘범죄’를 자백하는 것은 보다 심각한 범죄가 고발되었을 때 이를 부인하는 것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청진에서 철도 노동자로 일했던 41세 여성은 2004년 6월 연길 공항에서 남한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되었다. 온성 보위부에서 심문을 받았을 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 남을 수 없었기 때문에” 중국인 남성과 결혼했다고 인정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범죄는 부인했다.

심문 받는 동안 나는 남한으로 가려고 했던 사실을 부인했어요. 나는 일본에 유학 가는 친척을 배웅하느라 공항에 갔던 거라고 말했어요. 끝까지 부인했지요.⁵⁶

⁵³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12, 2007년 1월 29일.

⁵⁴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13, 22, 2007년 1월.

⁵⁵ 이금순, op. cit., p.50.

⁵⁶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12, 2007년 1월 29일.

그녀는 조국반역죄의 혐의(2004년 개정 형법 62조)에서 벗어났으며, 재판도 선고도 없이 4주 반 만에 결국은 석방되었다. 유사한 사례로 평양 출신의 27세 남성은 남한으로 변절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아 청진 보위부에서 일년 간 구금되었는데, 보위원들이 그에게서 자백을 받아내는데 실패한 후 그대로 석방되었다.⁵⁷

중국과 제3국(몽골, 베트남 등) 사이의 국경 지역에서 체포되어 수감된 사람들의 경우 예외 없이 더 집중적이고 오랜 기간 동안 심문을 받았다. 이들은 제3국을 통해 남한으로 변절하려 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일례가 되는 사건으로서 무산 출신의 21세 남성은 2002년 남한으로 가려고 두 번째 시도를 하던 중 몽골 국경 근처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두 곳의 서로 다른 보위부에서 네 달을 보냈으며 울란바토르의 대한민국 대사관에 들어가려 했다고 자백할 때까지 구타를 당했다. 그는 인민보안성에서 선고를 받기 전 가까스로 탈출했다.⁵⁸

예심원들은 북한 사회의 도덕적 기반을 공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어떤 행동도 가볍게 다루지 않는다. 중국인과의 결혼은 더 이상 심각한 혹은 ‘매국적인’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토지를 경작하여 소박한 살림을 꾸려가는 것은 ‘정직’하고, 고되며, 가난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반면 가라오케 바에서 손님들에게 마실 것을 갖다 주는 ‘편안한’ 일은 국가보위부의 도덕적 리트머스 시험지를 통과하지 못한다.

경성 출신의 한 여성이 심문을 받는 동안, 국가 보위부에서 그녀가 ‘안락하게 살았는지’, 즉 그녀의 생각에 따르면 가라오케 바와 같은 유흥 시설에서 일했었는지를 보려고 그녀의 손을 검사했다. 그녀는 어느 정도 자부심을 가지고 손을 내밀었고, 보위원들이 그녀의

⁵⁷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15, 2007년 2월 12일.

⁵⁸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4, 2007년 1월 21일.

손이 충분히 거칠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으로 그들은 그녀가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과 따라서 편안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⁵⁹

회령 출신의 또 다른 여성은 온성 보위부로 이송되기 전 도문에 있는 구금소에서 고위 중국 공안에게 도움을 간청했다. 그녀는 나중에야 이 행동이 실은 그녀를 곤경에 처하게 하는 것임을 알았다. 보위원들은 중국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그녀의 대담함에 격노했다.

그들은 나를 때리면서 소리쳤어요. “네가 뭔데 그런 도움을 요청해?” 그들은 내가 중국에서 여러 가지 나쁜 활동에 연루되었다고 의심했어요. 어느 날 나는 다른 다섯 사람과 함께 눈을 가린 채 비밀 장소로 옮겨졌어요. 내 생각에 그곳은 관리소였어요. 그곳은 모든 죄수들이 종신형을 받는 곳이었어요. 나는 그 시설에서 두 달을 보냈고 아주 집중적이고 혹독한 심문을 받았어요. 온갖 상세한 것들을 물었고 조금이라도 앞뒤가 안 맞는 것은 다시 심문했어요. 그들이 만족할 때까지 나는 몇 번이나 진술서를 썼어요.⁶⁰

예심의 핵심적인 부분은 탈북자의 사상과 동기를 밝혀내는 것이다. 몽골 국경 근처에서 체포된 무산 출신의 21세 남성은 신의주 보위원들이 그의 정치적 사상, 그리고 그가 남한으로 가고 싶어한 동기에 매우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그가 실제로 북한을 배신하려 한 것인지 자백할 것을 독촉했다고 말했다. 그의 출신지에서 온 보위원들은 그가 왜 남한으로 가고 싶어했는지, 자신의 조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불만인지를 물음으로써 그와 같은 종류의 심문을 계속했다.⁶¹

⁵⁹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26, 2007년 1월 29일.

⁶⁰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3, 2007년 1월 23일.

⁶¹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4, 2007년 1월 21일.

국가 보위부 요원들이 탈북자가 남한으로 도망치려 했거나 교회에 참석한 증거를 갖고 있을 때라도 이로 인해 자동적으로 관리소형이 선고되지는 않는다. 그 경우 탈북자의 정치적 사상과 동기가 판결을 좌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상도 출신의 68세 여성은 2004년 동남아시아(공극적으로는 남한)로 향하던 도중 산둥성 위해시에서 다른 탈북자 7명과 함께 체포되었다. 그녀는 온성 보위부로 송환되었으며, 중국에서 체포 서류를 넘겨 받은 보위원들은 그녀가 남한으로 도망치려 했다는 확고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가 탈북으로 인해 두 번째로 체포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상황은 더욱더 복잡해졌다. 그러나 그녀는 그녀의 정치적 사상이 건전하며 그녀의 동기에 문제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보위부 요원들에게 확신시키는데 성공했다.

내가 저지른 죄는 심각했지만 나는 중국 당국자들이 우리를 곧바로 송환시키지 않고 함정 수사로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그들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또한 (남한으로 탈출하려 했다는 정보를 담은) 체포 서류를 북한 당국자들에게 보내지 않겠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나는 보위원들에게 내가 남한이 좋아서 혹은 북한이 싫어서 남한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절망적인 식량 상황 때문에 남한으로 가고 싶어했다고 말했어요.⁶²

보위원들은 그녀를 더 이상 때리지도 심문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재판을 받지 않았으며 도 집결소에서 한 달간 복역한 후 마침내 풀려났다.

⁶²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13, 2007년 1월 28일.

수감 환경

국가보위부에 감금된 사람들은 심문이 진행 중이지 않을 때는 감방에 나란히 앉아 있어야 한다. 단속이 있는 기간에 수감자들이 넘칠 때는 방이 너무 좁아서 수감자들이 복도까지 밀려나오며 바로 뒤에 앉은 사람의 다리 사이에 등을 대고 앉아야 한다. 식사 시간과 하루 10분의 운동 시간을 제외하고는 아침부터 밤까지 말하지도 움직이지도 않고 앉아 있어야 한다. 말을 하거나 움직이다가 잡힌 사람은 간수에게 구타를 당한다. 인터뷰에 따르면 수감자들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심문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다고 한다. 서상도 출신의 여성은 졸다가 걸렸는데 “팔과 허벅지로 감옥 창살에 10분간 매달리는” 처벌을 받았다.⁶³

감옥 안에는 화장실이 있는데, 문이 없거나 있어도 아주 낮다. 한 여성은 “사람 머리가 보여요. 프라이버시가 없지만, 감옥 안에 있는 것이 너무도 힘들니까 누구도 체면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⁶⁴ 라고 말했다. 게다가 화장실에 갈 수 있는 횟수도 정해져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하루에 겨우 한번만 갈 수 있고, 이것은 엄격하게 지켜진다. 무산 출신 여성은 다음과 같은 일을 직접 경험했다.

간수에게 화장실에 가도 되냐고 물었다가 맞은 적이 있어요. 그 간수는 화장실에 보내주지 않았지만, 나는 너무나 급해서 결국은 갔어요. 나는 들켰고 권총을 청소하는 쇠 소재대로 머리를 맞았어요. 피가 흘렀지만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했어요. 피가 멈추라고 상처에 담뱃재만 발라 주더군요.⁶⁵

⁶³ Ibid.

⁶⁴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12, 2007년 1월 29일.

⁶⁵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5, 2007년 1월 28일.

수감자들은 정기적으로 씻을 수가 없으며 아주 적은 양의 물을 받아 여러 사람이 나누어 써야 한다. 회령 출신의 47세 여성은 2004년 회령 보위부에서 물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설명했다.

간수들은 하루에 물 한 양동이를 주고 여자 25명이 함께 사용하게 했어요. 감옥 안에는 위계 질서가 있었는데 오래 있었던 사람이 물을 먼저 사용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씻은 다음에야 우리가 씻을 수 있었어요. 우리 몸에선 때가 그대로 떨어져 나왔어요. 우리는 수건으로 몸을 문지른 다음 같은 양동이에 수건을 행귀야 했어요. 얼마나 더러운지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생리 중인 여자들도 있었어요. 몸을 닦고 나면 그 물로 바닥을 닦아야 했어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화장실에 물을 내리는데 썼어요.⁶⁶

기다림

도강자가 일단 국가보위부의 심문 과정을 마치고 나면, 기술적으로는 선고를 받을 준비가 된다. 도강자들의 절대 다수가 비정치적인 범죄를 선고 받기 때문에, 사건은 이후 형을 결정할 인민보안성으로 넘겨진다. 그런데 그 판결은 오직 출신지의 인민보안성에서만 이루어진다. 이는 도강자의 출신지가 예심을 받은 바로 그곳이 아닌 한 다음 목적지로 이송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감자들을 이송할 의지 또는 여력이 없어서 미결수 도강자들은 최종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출신지의 인민보안성에 마침내 도착하기 전까지 이곳 저곳의 수용소에서 평균 한 달에서 석 달을 보낸다.

형법 당국자들이 그 때까지 복역한 시간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조금이나마

⁶⁶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14, 2006년 2월 11일.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경 지역에서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은 상황이 더욱더 나쁠 수 밖에 없다. 2001년 청진에서 50km 남쪽에 있는 어랑 출신의 35세 여성은 자기 출신지의 인민보안성에 도착하는데 다섯 달이 걸렸다. 회령 보위부를 떠난 후, 먼저 회령 노동단련대로 이송되어 한 달을 보냈고, 그 다음 청진 도집결소로 보내져 네 달간 복역했다. 마침내 어랑에 있는 인민보안성에서 6개월 노동단련형을 선고 받았을 때 그 때까지 복역한 시간은 고려되지 않았다.⁶⁷

6. 북한 수용소의 강제 노동

북한에는 여러 종류의 수용소들이 있고, 각 수용소마다 특정 범죄를 취급한다. 일반적으로 노동단련대는 대부분의 도강자들과 기타 경미한 범죄자들을 구금하는 곳이다. 도 집결소는 출신지의 인민보안성으로 이송하는 도중에 있는 수감자들을 구금하는 장소로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교화소는 강력범이나 도강자들 중에서도 심각하지만 정치적 의도가 없는 사람들을 수감한다. 이 세 가지의 행형 시설 모두 수감자들이 노동 및 교화를 통해 ‘죄를 뉘우치도록’ 강요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노동단련대

예심이 끝나면 대부분의 도강자들은 노동단련대로 보내진다. 노동단련대마다 그리고 중국에서 최근 공안 단속이 있었는지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수감자 수는 다르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100명 또는 그 이상의 수감자들이 수감되어 있으며, 도강자들이 주를 이룬다.

⁶⁷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8, 2007년 1월 21일.

노동단련대에 구금된 도강자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출신지의 인민보안성으로 이송되는 과정에 있는 미결수 도강자들이다. 인터뷰에 따르면, 이송 중인 도강자들이 노동단련대에서 보내는 시간은 평균 33일이다. 두 번째 유형은 형을 받은 기결수들로서 도강자들이 대다수인데, 비교적 가벼운 범죄로 출신지의 인민보안성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수형자들이다.

도강자들이 판결을 받았건 안 받았건 상관없이 노동단련대에 있는 모든 수감자들은 강제 노동에 처해진다. 이는 구금 시설에 수감된 미결수들은 “노동에 처해지지 않는다”⁶⁸ 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북한의 구금시설운영규정 22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계속해서 “구금, 연금 중이거나 또는 조건부 석방된 사람에게 강제 노동을 부과하는 법적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⁶⁹ 고 주장한다.

강제 노동

전반적으로, 노동단련대의 수감자들은 다른 수용소의 수감자들보다 더 많은 시간 노동을 한다. 수감자의 하루는 오전 4시에 시작하며 마침내 취침을 허락 받을 때까지⁷⁰ 밤늦도록 계속된다. 수감자들은 매우 긴 시간 노동을 하는데, 이 보고서에서 인터뷰한 대부분의 도강자들은 휴일 없이 매일 10시간에서 12시간 노동을 했다. “어두워 질 때 까지” 일했다는 것이 공통된 대답이었다.

노동은 교화의 도구로 간주된다. 노동을 통해 죄수들은 죄를 뉘우친다. 이러한 처벌을

⁶⁸ Second Periodic Repor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its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실행에 대한 북한의 제2차 정기 보고서), CCPR/C/PRK/2000/2, 2000년 5월 4일, p.21.

⁶⁹ Ibid, p.17.

⁷⁰ 아침 식사 이전에도 수감자들은 장작 모으기, 짐승에게 먹이 주기, 풀 베기 등 여러 가지 작업을 배당 받는 경우가 많다. 또 수감자들은 애국적인 노래들을 부르면서 구보를 하거나 북한의 정치 이념을 학습한다.

실행하는 경비원들은 그들이 담당한 수감자들에게 아무런 동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는 어랑 출신의 38세 여성이 2005년 노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졌을 때 출신지의 노동단련대 경비원에게 당한 처우를 보면 알 수 있다.

한번은 몸이 아파서 일을 빨리빨리 할 수가 없었어요. 경비원이 나를 발로 찼어요. 그 사람이 내 허리를 다치게 했는데도 계속해서 일을 해야 했어요. 경비원은 내가 중국으로 간 죄를 뉘우쳐야 한다고, 아픈 척도 피곤한 척도 하지 말라면서 소리를 질렀어요.⁷¹

수감자들은 중노동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하지 않을 경우 구타를 당한다. 수감자가 “지쳐서” 쓰러지는 경우에 조차도, “여전히 일어나서 일을 계속해야 한다.”⁷² 강제 노동의 종류는 각 노동단련대마다, 계절에 따라 그리고 지역 당국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다. 강제 노동은 수용소 밖에서 이루어지며, 국가가 관리하는 농사, 벌목, 도로 공사, 채석, 석탄 채굴, 건설 등의 일이 포함된다. 회령 출신으로 전직 중학교 교사였던 42세 여성은 2003년 온성 노동단련대에서 겪은 강제 노동의 성격과 그것으로 인해 수감자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 설명했다.

우리는 산으로 보내져 돌을 등에 지거나 머리에 이어서 날랐어요. 돌에 긁혀서 등이 벗겨지고 피가 났어요. 우리는 트럭까지 돌을 져 날라야 했고, 그런 다음엔 공사장으로 보내졌어요. 너무도 힘든 일이어서 사람들은 정신을 잃었어요. 경비원들은 언제나 소리를 지르고 수감자들을 때렸어요. 그 공사를 할 때, 밤 11시까지도 귀가하지 못했어요. 수용소까지 걸어서

⁷¹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10, 2007년 1월 22일.

⁷²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2, 2007년 1월 22일.

돌아오는데 한 시간이 넘게 걸렸어요.⁷³

2004년 출신지인 무산의 노동단련대에 수감돼 있던 한 탈북자는 산에서 벌목하는 일을 해야 했다.

다른 수감자들이 자른 통나무를 철사를 이용해 200m 떨어진 산 아래로 옮기는 게 내게 맡겨진 일이었어요. 철사가 살을 찢어서 손에서 피가 나는데도 일을 계속해야 했어요. 나는 경비원에게 맞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통나무를 많이 자르고 나르지 않는다고 매를 맞았어요.⁷⁴

한 인터뷰를 통해 수감자들은 또한 북한에서 불법으로 되어 있는 활동에 강제로 동원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35세의 한 여성은 그녀가 2001년 승암의 노동단련대에서 양귀비를 재배해야 했던 일을 설명했다.

우리는 양귀비 밭으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양귀비 알뿌리에 흙집을 내고 거기서 나오는 즙을 모아야 했어요. 경비원들은 우리가 외국에 팔 아편을 만드는 걸 돕고 있는 거라고 설명했어요. 우리가 버는 외화가 우리 조국과 인민을 부양하도록 도울 거라고요.⁷⁵

이는 2000년 하드캐시 프로덕션(Hardcash Production)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비밀 국가의 아이들(Children of the Secret State)에 나오는 정보와 일치한다. 다큐멘터리는 군대에 자금을 대기 위해 양귀비 재배를 강요 받았던 한 북한 농부를 인터뷰했다.⁷⁶

⁷³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16, 2007년 1월 26일.

⁷⁴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5, 2007년 1월 28일.

⁷⁵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23, 2007년 1월 27일.

⁷⁶ Hardcash Productions, Children of the Secret State(비밀 국가의 아이들), 2000년 10월 19일

북한이 헤로인을 생산하고 밀송하는데 연루된 것은 197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보다 최근인 2003년 4월 호주 경찰은 호주 남부의 해안에서 북한 선박 봉수호에서 50kg의 고품질 헤로인을 압수했다. 체포된 몇 명의 선원은 북한 노동당 당원이었다.⁷⁷

경비원들뿐만 아니라 수감자들 중에서 뽑힌 반장들이 수감자들의 노동을 감시한다. 반장은 일반적으로 남자이며, 주로 건강하고 힘이 세다는 이유로 선택된다. 노동단련대의 작업량 책임이 그들에게 맡겨지는 경우가 많다. 수용소에 따라서 수감자들은 경비원 혹은 반장에게, 아니면 둘 다로부터 구타를 당할 수 있다.

노동단련대에서 강제노동을 했던 23명의 인터뷰 대상자 중 한 명을 제외한 모두가 경비원이나 반장에게 자신이 구타를 당했거나 또는 다른 수감자들이 맞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몇몇 사람은 오직 남자 수감자들만이 매를 맞았거나 혹은 여자 수감자들보다 더 많이 맞았다고 말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여자 수감자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이라고 여겼다.

무산 출신의 한 농부는 동료 남자 수감자가 굶주린 상태에서 돌을 캐고 그것들을 산 아래로 옮기는 일을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설명했다. 그는 잠깐 쉬다가 자고 있는 것을 어느 경비원에게 들켰다.

[경비원은] 모든 반장들에게 그만 하라고 할 때까지 무거운 돌을 한 곳에서 약 100m 정도 떨어진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하는 벌을 내렸어요. 잠자던 죄수를 담당했던 반장은 크게 화가 났고 몽둥이를 들어 그 죄수의 허리와

최초로 방송. <http://www.hardcashproductions.com/recent02.html>

⁷⁷ Richard C. Paddock & Barbara Demick, "N. Korea's Growing Drug Trade Seen in Botched Heroin Delivery (서투른 헤로인 운송에서 나타난 북한의 마약 거래 증가)", 워싱턴포스트, 2003년 5월 21일.

다리를 때렸어요. 그 죄수는 한 쪽 다리가 부러져 3주 동안 걷지를 못했어요.⁷⁸

노동단련대에서 수감자들은 한 부대처럼 생활한다. 그들은 다 함께 일어나고, 운동하고, 씻고, 일하고, 먹고, 화장실에 가고, 학습하고, 잠잔다. 이와 같은 집단 행동은 ‘연좌적인’ 처벌 관행으로까지 확대된다. 예를 들어, 한 구성원이 수용소 규칙이나 규범을 암기하지 못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암기할 때까지 집단 전체가 잠을 자지 못한다. 한 수감자가 들에서 자기 몫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와 같은 작업을 배정 받은 모든 사람이 구타를 당한다. 혹은 한 수감자가 탈출을 하면 모든 사람이 벌로서 백 번씩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기를 해야 한다. 청진 출신 한 탈북자는 2006년 온성에 있는 노동단련대에서 어떻게 처벌을 받았는지 설명했다.

반장들 사이에 각 반이 얼마나 많은 작업을 하느냐를 놓고 경쟁이 있었어요. 다른 반보다 작업을 덜하면 식량을 적게 받았어요. 경쟁에서 진 작업반의 반장은 작업이 느렸던 사람들을 골라내요. 그 사람들은 일어서야 하고 반장은 그들이 노력을 안 해서 반 전체가 식량을 적게 받았다고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는 매를 맞아요.⁷⁹

탈출을 시도한 수감자들은 가혹하게 처벌 받는다. 교도관들은 반장들에게 탈출을 시도한 사람들을 다른 수감자들이 보는 앞에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경고와 예방책으로 삼도록 만든다. 회령 출신 탈북자는 2003년 그녀가 구금되어 있는 동안 어느 여성 수감자가 탈출을 시도하다 잡혔을 때 일어났던 일을 자세하게 이야기 했다.

⁷⁸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5, 2007년 1월 28일.

⁷⁹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2, 2007년 1월 22일.

한 번에 다섯 명-두 명의 여성과 세 명의 남성-이 수용소에서 탈출을 시도했어요. 여자들 중 한 명이 붙잡혀서 수용소로 되돌아 왔어요. 그녀는 반장들에게 구타를 당했어요. 반장들은 그녀의 배, 허리, 머리를 발로 찼어요. 우리가 탈출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모든 수감자들 앞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 다음 우리는 새벽 2시까지 그녀를 비판해야 했어요.⁸⁰

이 보고서의 인터뷰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 또는 모욕적인 처벌의 사용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7조와 북한의 구금시설운영규정 37조와 39조, 그리고 교화소운영규정 29조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수용소에 만연되어 있다.⁸¹

일부 수감자들은 질병, 장애, 허약 등의 이유로 강제 노동에서 제외되지만,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50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처우는 노동단련대마다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구금되었을 때 51세였던 청진 출신 탈북자는 온성에 있는 노동단련대에서 노동을 면제받았다.⁸² 그녀는 조용히 앉아 하루를 보냈으며 저녁에는 교화 시간에 참여했다. 노동을 해야 했던 노인 수감자도 있었지만, 다른 젊은 수감자들보다는 적게 일을 했거나 부엌일이나 청소처럼 가벼운 일을 배정받았다.⁸³

이와는 반대로 일부 노인 수감자들은 강제 노동을 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과 보조를 맞추지 못할 때 구타와 욕지거리를 당했다. 2001년 회령 노동단련대에 구금되어 있을 때

⁸⁰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16, 2007년 1월 27일.

⁸¹ Second Periodic Repor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its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의 실행에 대한 북한의 제2차 정기 보고서), CCPR/C/PRK/2000/2, op. cit., p.21.

⁸²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20, 2007년 1월 25일.

⁸³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11, 16, 2007년 1월.

57세였던 경성 출신 여성은 늙고 배고팠기 때문에 들에서 일을 하다 탈진했던 일을 설명했다.

한 번은 씨를 뿌리고 있었는데 너무 지쳐서 잠깐 멈춰 쉬려고 했어요. 젊은 경비원이 나를 보고 다가와 내 목덜미를 잡았어요. 나는 경비원에게 용서해 달라고 빌었지만, 그는 그냥 욕을 하면서 내 목과 머리를 발로 찼어요. 중국에서 그렇게 잘 먹었는데 어떻게 감히 피곤해 질 수 있냐고 했어요. 그때 맞은 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만성적인 허리 통증과 두통이 있어요.⁸⁴

온성 출신 한 탈북자는 한 할머니가 논에서 김매기를 빨리빨리 하지 못했던 일을 기억하면서, 위와 같이 노인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별은 보통 100번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기를 하는 거였어요. 일흔 살 할머니 한 명이 보조를 맞추지 못해 별을 받았어요. 수용소 안에 노인에 대한 존중은 없었어요. 할머니는 별을 감당할 수가 없었고, 경비원에게 차라리 죽이라고 소리쳤어요.⁸⁵

임신한 수감자

2001년에서 2006년까지 다양한 구금 단계에서 일정 기간 임신부들과 함께 있던 적이 있는 인터뷰 대상자들은 13명이었다.⁸⁶ 대부분의 인터뷰 대상자들은 임신한 여성들이 강제 노동을 면제 받았으며 노인들이나 병자들과 함께 수용소 안에서 하루를 보냈다고

⁸⁴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26, 2007년 1월 29일.

⁸⁵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7, 27, 2007년 1월.

⁸⁶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1.3.6,7,8,11,13,16,17,20,21,22,24, 2007년 1월.

말했다. 이는 2000년 이후 임신부들에 대한 대우가 상당히 개선되었음을 시사한다. 2000년 이전에는 임신한 여성들이 징벌을 위해 따로 수감되었으며, 영아 살해, 강제 낙태 및 기타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가 있었다.⁸⁷ 2005년-2007년의 인터뷰에서는, 그 전에는 임신한 도강자들에 대한 처우가 나빴다는 것을 인터뷰 대상자들이 알고 있는 것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아 살해 사건은 한 건도 나타나지 않았고, 강제 낙태는 한 건만 나타났다.

임신 3개월 내의 여성들은 임신 개월 수가 더 오래되어 종종 노동을 면제 받는 여성들보다 노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임신한 수감자가 강제 노동에 처해질 때는 다른 사람보다 적은 일을 배정받거나 청소, 부엌일, 짐승에게 먹이주기 등 수용소 내에서 할 수 있는 보다 가벼운 노동이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어랑 출신의 한 여성은 임신한 수감자들이 때때로 집으로 돌려 보내지는 것을 목격하였다.

임신한 수감자가 두 명 있었어요. 그들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들은 수용소에 조용히 앉아 있기만 했어요. 두 명 모두 일찍 석방되었고 다시 중국으로 가지 않겠다는 각서에 서명을 한 후에 귀향했어요. 임신 여성들에 대한 처우는 바뀌었어요. 지금은 임신부에게 낙태를 하도록 강요하지 않아요.⁸⁸

⁸⁷ David Hawk, op. cit., p. 59-72; Human Rights without Frontiers, Baby Killings: Fact-finding Mission by Human Rights Without Frontiers(영아 살해: 국경없는 인권 현지 조사단), 2002년 2월 28일, http://www.hrwf.net/north-korea/nkhtml/nk_press_services_feb_28_2002.html; Norma Kang Muico, op. cit., p. 11. 참조.

⁸⁸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7, 2007년 1월 27일.

교화

모든 수용소의 수감자들은 일반적으로 저녁 식사 이후에 2시간에서 4시간 동안 진행되는 교화 시간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 교화의 목적은 훌륭한 공민이 되는 법과 사회주의의 규칙과 규범에 복종하는 법을 가르침으로써 수감자들의 사고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전직 광부였던 34세 탈북자는 “애국적인 노래들을 배우고, 북한의 정책을 학습하고, 기본적으로 절대 중국으로 다시 가지 말라는 명령을 들었던 것”을 상기했다.⁸⁹

교화 시간 이외에도 수감자들은 자아비판 시간에 참여해야 한다. 이 시간에 수감자들은 심지어 아무 잘못도 안 한 경우에도, 자신들이 잘못된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행동을 비판하도록 강요 받는다. 거부하면 구타를 당한다. 어떤 수감자가 발언을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반장의 책임이다. 자아비판 모임에서 수감자들은 또한 애국적인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가사나 춤 동작을 모르면 구타를 당한다.⁹⁰

수감 환경

노동단련대는 비좁고 비위생적이다. 한 방에는 약 20명의 수감자가 있으며, 공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선 채로” 또는 “서로 포개져서” 잠을 잔다.⁹¹ 물은 매우 부족해서 수감자들에게는 얼굴을 씻고 가끔은 양치질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물만 준다. 2005년 노동단련대에 있었던 회령 출신의 43세 여성은 그곳에서 물을 어떻게 아껴 썼는지 설명했다.

⁸⁹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27, 2007년 1월 25일.

⁹⁰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16, 21, 23, 27, 2007년 1월.

⁹¹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11, 25, 2007년 1월.

아침이 되면 물 한 양동이를 주고 모든 수감자들에게 나눠서 씻게 해요. 우리는 줄을 서서 차례차례 한 바가지씩 물을 썼어요. 물에 수건을 담가 얼굴을 닦았어요. 물이 충분하지 않아 몸은 닦을 생각도 못하죠. 물은 아주 빨리 더러워졌어요. 물의 양이 너무 적어서 재빠르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못 쓸 때도 많았어요.⁹²

운 좋게도 여름철에 들에서 일을 한 사람들은 가끔 계곡물에 몸을 씻도록 허락 받는다.⁹³ 비위생적인 환경 때문에 대부분의 수감자들에게 이가 썩는다. 은덕 출신의 35세 여성은 “수용소에 세면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가 있었어요. 우리는 옥수수 밭 근처에 있는 냇가에서 얼굴을 씻을 수 있을 뿐이었어요.”⁹⁴ 라고 회상했다.

여성 수감자들에게 특히 힘든 기간은 생리 중일 때이다. 구금시설운영규정은 모든 수감자들이 “개인 위생 도구”를 공급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적합한 생리대가 없으므로 여성들은 속옷으로 대용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은 세면 시설이 없음으로 인해 더욱 악화된다. 회령 출신 탈북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성 수감자들은 속옷에서 뜯어낸 조각들을 생리 기간 동안 생리대로 사용했어요. 때로는 빨지도 않고 그 조각들을 다시 사용해야 했어요.⁹⁵

노동단련대의 고된 노동과 열악한 수감 환경 때문에 구금 중에 수감자들이 죽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경성 출신의 한 여성 탈북자는 2001년 회령의 노동단련대에 구금되어

⁹²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9, 2007년 1월 25일.

⁹³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16, 22, 2007년 1월.

⁹⁴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25, 2007년 1월 25일.

⁹⁵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9, 2007년 1월 25일.

있는 동안 여러 차례 죽음을 목격했다.

내가 구금돼 있는 동안 세 명의 여성 수감자들이 죽는 것을 보았어요. 한 사람은 들에서 일을 하다가 쓰러졌고, 또 한 사람은 잠 자다가 죽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창자에 병이 나서 죽었어요.⁹⁶

음식

거의 모든 수감자들이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식량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식수 또한 부족하며 손쉽게 구할 수도 없다. 끼니는 정해져 있고 조금씩만 달라질 뿐이다. 수감자들은 하루에 세 번, 한번에 30분씩 식사를 하는데, 옥수수 알갱이를 밥처럼 찌거나, 곁집질과 속대를 포함해 가루로 만들거나, 또는 죽으로 만든 것, 거기에 양배추 이파리가 조금 들어있는 소금 국으로 이루어진 최소필요량에 못 미치는 식사를 한다. 노동단련대의 음식은 질이 너무 떨어져서 한 수감자는 “중국 농부들이 짐승들에게 먹이는 음식”⁹⁷에 비교했다.

끼니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감자들은 먹을 것을 찾아 다니거나, 들에서 옥수수를 훔치거나, 식량을 구입하거나, 가족들이 넣어주는 면식으로 보충하려 이리저리 애쓴다. 가까운 곳에 가족이 사는 사람들은 가족 면회를 통해 적지 않은 도움을 받는다. 회령 출신의 38세 여성은 출신지의 노동단련대에서 때때로 그녀의 가족으로부터 면식을 받았으며, 가족이 없는 나이든 수감자들이 어떻게 병이 들고 영양 실조에 걸렸는지에 대해 이야기 했다.⁹⁸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수감자들이 영양실조, 설사, 소화 장애로 고통 받는 것은 놀라운

⁹⁶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26, 2007년 1월 29일.

⁹⁷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14, 2006년 2월 11일.

⁹⁸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3, 2007년 1월 23일.

일이 아니다. 또 다른 회령 출신 탈북자는 2002년 회령 노동단련대에서 제대로 먹지 못해 여러 가지 증상을 겪었다.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뭉텅이로 빠졌어요. 머리가 벗겨진 부분이 아직도 그대로예요. 영양실조 때문에 손톱이 너무 약해져서 뒤집어지곤 했어요.⁹⁹

의료

노동단련대에는 제대로 먹지 못하고, 과로하고, 구타와 비위생적인 수감 환경에 처한 수감자들에게 필요한 적절한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다. 이러한 환경에서 수감자들은 질병에 걸리기 매우 쉽다. 2001년 회령의 노동단련대에 수감되었던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문제는 어떤 특정한 병이 아니라, 열악한 생활조건, 부족한 식량, 더러운 물과 한데 얽힌 중노동 그 자체였어요. 예를 들어 수감자들은 목이 너무 말라서 더러운 줄 알면서도 그 물을 마셔요.¹⁰⁰

많은 노동단련대는 영내에 의무실을 갖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아픈 사람은 몇 가지 민간 약품을 받거나, 혹은 아주 심한 경우에는 외부 병원에서 의사가 호출된다. 의무실이 있는 수용소도 약품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무용지물이기만 마찬가지다. 약이 필요한 사람은 직접 약을 사야 한다. 송암 출신 탈북자는 온성에 있는 노동단련대에서 수감자들이 약을 어떻게 조달하는지 설명했다.

⁹⁹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14, 2006년 2월 11일.

¹⁰⁰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26, 2007년 1월 29일.

노동단련대에 간병원이 있었지만 설사 같은 건 병 취급도 안 해요. 정말 많이 아픈 사람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보통은 다른 수감자들로부터 약을 사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약을 사줄 만한 사람을 구해야 했어요. 한번은 내가 고열과 설사에 걸린 적이 있었어요. 어느 남자 수감자가 친절하게도 자기 담배를 다른 수감자에게 주고 약을 구했고, 그걸 나한테 줬어요.¹⁰¹

약을 투여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수용소 간병원들의 유일한 역할은 병을 진단하는 것이다. 며칠 간 설 수 있게 해주는 것 외에는 환자를 위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매우 어려운 일이며, 몇몇 탈북자들은 간병원들이 아주 인정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했다. 그들은 수감자들이 노동으로 죄를 뉘우쳐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하게 아픈 경우가 아니면 배정된 노동을 면제 받지 못한다. 사망 처리를 피하기 위해 심하게 아픈 수감자들은 석방되어 집으로 보내진다.

도 집결소

함경북도 도 집결소는 청진에 위치해 있다. 도 집결소는 대체로 청진 남쪽 출신 수감자들이 출신지의 인민보안성 혹은 출신지에서 가까운 수용소로 이송되기 전 머무는 구금소 역할을 한다.¹⁰² 따라서 온성과 회령 거주자들을 제외하고, 온성 국가보위부를 통해 송환된 도강자들은 일반적으로 청진 도 집결소를 거쳐간다. 청진 도 집결소가 지역 구금소 역할을 한다는 것은 지역 전체의 기관들로부터 수감자를 이송 받는다는 의미이다. 청진 도 집결소의 수감자 수는 따라서 노동단련대보다 훨씬 많다. 평균적으로는 약 200명 또는 그 이상의 수감자들이 있고 1000명까지 수감할 때도 있다.¹⁰³

¹⁰¹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23, 2007년 1월 26일.

¹⁰² 청진에서 약간 북쪽에 있긴 하지만 무산 출신자들도 청진을 거쳐서 처리된다. 수감자들이 기차로 이송되는 것으로 보아, 이는 철로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¹⁰³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8, 2007년 1월 21일.

이 보고서에서 인터뷰한 도강자들의 경우, 형을 받기 전에 청진 도 집결소에 구금된 평균 기간이 37일로 이는 노동단련대에 머문 기간보다 더 길다. 이는 주로 도 집결소의 모든 수감자들이 이송을 위해 대기 중에 있고, 출신지 또는 출신지에서 가까운 마을이나 도시의 보위부나 안전부로 호송되기를 기다리기 때문이다. 지역 보안성의 의지와 기타 가용 자원에 따라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청진에 수감되었던 한 탈북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청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수감자들은 출신지에서 호송원이 그들을 데리러 올 때까지 도 집결소에서 대기해야 해요. 여기엔 보통 긴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때로는 도 집결소에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감자의 가족들이 출신지의 보안성 관리들에게 먹을 것과 돈을 가져다 줘요.¹⁰⁴

강제 노동

노동단련대와 마찬가지로 청진 도 집결소는 수감자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킨다. 몇몇 인터뷰는 도 집결소의 노동이 더 가혹하다고 설명했다. 아마도 그에 대한 보상으로 노동 시간은 약간 더 적고, 식사는 조금 더 낫다. 2006년 수감되었던 길주 출신 여성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9월 중순이어서 옥수수 추수를 해야 했어요. 노동은 훨씬 더 힘들었고 하루에 8시간에서 9시간 들에 있었어요. 나는 맞은 적이 없지만, 경비원들은

¹⁰⁴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12, 2007년 1월 29일.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구타해요. [...] 일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는 식량을 더 낮게 받았어요. 우리는 강냉이 밥과 반찬 그리고 국을 먹었어요.¹⁰⁵

어랑 출신 탈북자는 “일이 고되었기 때문에” “음식이 비교적 더 좋았다”는 사실을 확인해주었으며, 2005년 수감자들이 일하던 수력발전소에서 “일하는 중간에 과자, 떡, 빵과 같은 간식을 먹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모두가 그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았다. 2002년 수감되었던 한 사람은 한 여성 수감자가 끼니를 더 채우고 싶은 간절한 바람에 쥐를 한 마리 잡아서 그것을 구워도 되냐고 경비원에게 물었던 일을 설명했다. 경비원은 그녀에게 욕을 했고 별로 가까운 냇가에서 물을 열 번 길어 오도록 시켰으며, 불쌍한 그 여인은 결국 지쳐서 기절했다.¹⁰⁶

도 집결소에서 수감자들에게 할당되는 노동은 노동단련대와 비슷하며, 농사, 벌채, 벽돌 굽기, 건설 등에 이른다. 무산 출신의 47세 여성은 2003년 두 달 동안 해야 했던 강제 노동의 종류를 설명했다.

과중하는 시기라서 우리는 국영농장으로 보내져 씨를 뿌리고 풀을 뽑았어요. 뽑아야 할 풀이 너무 많아서 등골이 부서지는 줄 알았어요. 경비원들이 검사했을 때 뽑지 않은 잡초가 발견되면 그 이랑을 다시 하게 했어요.¹⁰⁷

도 집결소의 수감자들은 더 힘든 일을 하고, 또한 구타도 더 많이 당한다. 인터뷰 대상자 중 94%가 노동단련대에서 구타를 당한 적이 있거나 다른 사람이 구타 당하는 것을 본

¹⁰⁵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1, 2007년 1월 26일.

¹⁰⁶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23, 2007년 1월 26일.

¹⁰⁷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17, 2007년 1월 29일.

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신이 실제로 구타를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44%에 불과했다.¹⁰⁸ 매우 대조적으로 도 집결소에서 강제 노동을 한 사람의 70% 이상이 경비원에게 구타를 당한 적이 있으며, 100%가 다른 수감자들이 구타 당하는 것을 목격했다. 청진 출신의 41세 탈북자는 2004년 11월 청진 도 집결소에서 한 달을 보냈는데, 다른 수감자들과 마찬가지로 구타를 경험했다.

우리는 공사장으로 가서 조를 짜서 돌과 시멘트를 날랐어요. 나는 빨리빨리 걷지 못한다고 온몸에 매를 많이 맞았어요. 다리를 많이 다쳐서 다른 사람들과 속도를 맞출 수 없었어요. 경비원들만 나를 때렸고, 반장들은 때리지 않았어요. 양배추 밭에서 풀을 뽑기도 했어요. 일을 너무 열심히 안 해서, 너무 느려서, 잡초를 다 안 뽑아서 등, 온갖 이유로 맞았어요.¹⁰⁹

경비원들만 때리고 반장들은 때리지 않았다는 말은 다른 인터뷰 대상자들에게서도 반복되었다.¹¹⁰ 도 집결소에서 반장의 주요 책임은 작업량을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수감자들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청진 도 집결소에서 복역했던 사람들과의 인터뷰에서 수감자들의 탈출 시도가 흔한 것으로 나타났다.¹¹¹ 그러한 행동을 막기 위해 경비원들은 반장들에게 모든 수감자들을 모아 놓고 탈출을 시도하다 잡힌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처벌하게 한다. 송암 출신 여성은 다음과 같은 사건을 기억했다.

구금돼 있는 동안 두 명의 여자 수감자가 탈출을 시도했어요. 결국은 붙잡혔고 반장들이 모든 수감자들을 집합시켰어요. 그리고 우리 앞에서

¹⁰⁸ 이는 이 보고서의 인터뷰 대상자의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사실에 기인하며, 또한 인터뷰한 여성 중 다수가 남성 수감자들이 여성 수감자들보다 더 많이, 더 심하게 구타를 당했다고 말했다.

¹⁰⁹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12, 2007년 1월 29일.

¹¹⁰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1, 17, 23, 2007년 1월.

¹¹¹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1, 8, 2007년 1월.

반장들이 여자들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고 몸을 발로 찼어요. 그 다음날
그들을 봤는데 두 여자 모두 얼굴에 멍이 들고 부어 있었어요. 그 날 두
여자는 신발도 없이 노동을 해야 했어요.

승암 출신의 이 여성은 또한 2002년에 수감자들의 탈출을 막기 위해서 경비원들이 여성
수감자들만 들에서 일하게 했다고 언급했다.¹¹²

강제 노동을 하는 동안 수감자들은 계속해서 뛰어 다녀야 한다. 이는 북한의 행형 체계에
뿌리 박힌 교화 문화의 핵심을 드러낸다. 수감자들은 죄를 뉘우치기 위해 지속적인
수준의 물리적 고통과 피로움을 당한다. 예를 들어, 무산 출신 한 탈북자는 일하는 동안
항상 뛰어 다녀야 했다. 걸어 다니는 것은 결코 허용되지 않았다. 걸어 다니면 경비원이
그를 삼으로 때렸다.¹¹³ 다른 수감자도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 했다.

겨울이라 농사일이 없었기 때문에 벽돌 작업을 했어요. 우리는 벽돌을
만들어야 했고, 50kg의 벽돌을 지정된 적재 장소까지 옮기면서 뛰어다
녔어요. 뛰지 않으면 매를 맞았어요.¹¹⁴

수감 환경

청진 도 집결소의 수감 환경은 노동단련대와 비슷하다. 수감자들은 비좁고 지저분한
감방에서 생활하며, 평균 20명이 한 방을 쓴다. 물은 마찬가지로 부족하며 거의 몸을
씻을 수 없다. 모든 수감자들이 이(lice)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으며, 여성 수감자들은 생리

¹¹²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23, 2007년 1월 26일.

¹¹³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4, 2007년 1월 21일.

¹¹⁴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23, 2007년 1월 26일.

기간 동안 커다란 고통을 겪는다. 의료 시설은 존재하지 않거나 아주 원시적인 수준이다. 약을 쉽게 구할 수가 없고, 약이 있지도 않기 때문에 수용소 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응급책’은 몇 일간 노동을 면하게 해주는 것뿐이다.

인민보안성

인민보안성은 인민보안성(PSA) 관할하에 있으면서 관할 구역의 모든 비정치적 범죄를 다룬다. 1998년 사회안전부가 인민보안성으로 개칭되었으나, 많은 북한주민들은 일상적으로 여전히 ‘안전부’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도강자들의 출신지에 있는 인민보안성은 사법적 판결이 내려지는 동안 구금되는 장소이다. 그 곳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법적 절차가 있다. 하나는 공식적인 재판으로 이는 교화소로 보내질 것이라는 의미이며, 두 번째는 비공식적인 선고로 노동단련대로 보내질 것임을 의미한다. 이 단계의 구금에서는 강제 노동이 없다.

정식 재판

도강자들에 대한 공식적인 재판은 인민보안성 시설 내에서 이루어진다. 두 달 정도가 걸리는 국가보위부의 길고 상세한 예심과 달리 재판은 몇 시간 내에 종결된다. 도강자들은 개별적이 아닌 집단으로 재판을 받으며 일반적으로 재판은 공개되지 않는다. 판사 2명, 변호사, 검사, 인민보안성 국장과 부장 등 보통 대여섯 명의 관료들이 참석한다. 이 관료들의 역할은 모호한데, 그들 모두 똑같은 역할, 즉 사건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구축하는 역할을 공유하는 듯 하다.

2006년 재판을 받은 무산 출신의 27세 남성은 “변호사는 나를 옹호하지 않았어요. 그는

다른 관료들처럼 내게 질문만 던졌어요.”¹¹⁵ 라고 말했다. 이러한 절차는 공정하고 공개적인 심문을 보장하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14조에 위배되는 것이며, 또한 “변호인은 법에 따라 사건의 진상이 정확히 밝혀지고 피심자, 피소자의 권리가 정확히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¹¹⁶ 는 북한의 1999년 개정 형사소송법 173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재판에서 탈북자들이 받는 질문은 도강한 목적, 중국에서의 활동, 남한 사람 및 다른 외국인과의 접촉 여부, 교회 출석, 그리고 남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프로그램에 노출되었는지에 대한 것이다. 어랑 출신의 36세 여성은 2005년 도강으로 다른 네 사람과 함께 재판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을 변론하려 헛되게 애썼던 일을 설명했다.

그들은 내가 왜 중국으로 갔는지를 물었어요.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나의 도강 행위가 조국에 대한 배신이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내가 중국인 남편의 성 노리게였다며 비난했어요.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나는 그저 살아남으려 애썼을 뿐이라고 말하며 나 자신을 변호했어요. 나는 중국에서 날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고 나의 남편이 나를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가족을 도울 수 있었어요. 판사들은 그것이 정당한 변론이 아니라고, 내가 명백히 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어요.

그녀는 교화소 14개월을 선고 받았다. 5명에게 판결이 내려진 후, 판사 중 한 명이 7일안에 항소할 수 있다고 알려줬지만 항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¹¹⁷

¹¹⁵ 안티슬레이버리, 사례 5, 2007년 1월 28일.

¹¹⁶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통한문제연구소(NK Chosun), 2007년 2월. http://nk.chosun.com/law/law.html?ACT=detail&mode=list&law_id=236&nsflag=N

¹¹⁷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7, 2007년 1월 27일.

일부 절차는 도강에 대한 질문도 없이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경성 출신의 30세 여성 탈북자는 2005년 4분에 걸친 재판에서 그녀의 진술서를 큰 소리로 읽으라는 명령만을 받았다. 그녀가 진술이 사실임을 확인한 후, 판사들은 그녀에게 교화소 6개월을 선고했다. 그녀는 그 때까지 복역한 시간을 적용 받고 석방되었다.¹¹⁸

비공식 선고

재판과 비교했을 때, 도강자들을 노동단련대로 보내는 비공식 선고는 적법 절차를 훨씬 더 무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도강자들은 단지 인민보안성의 안전원들로부터 노동단련대에서 특정 기간 동안 복역할 것이라는 말만 듣는다. 그 결과 일부 탈북자들은 자신들이 선고를 받은 것이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어랑 출신의 한 탈북자는 2005년 5월 지역 인민보안성에서 3일을 보냈는데, 그곳에서 중국에서의 그녀의 활동에 대해 심문을 받았고, 그런 다음 어랑의 노동단련대에서 6개월을 보냈다.¹¹⁹ 이는 분명히 비공식적 선고의 사례지만 안티슬레이버리와 인터뷰 중 그녀는 자신이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무판결 석방

북한 당국자들이 도강자에 대한 사법적 절차, 구금, 심문에 많은 힘을 기울이지만, 실제로는 안티슬레이버리와 인터뷰한 사람 중 절반만이 출신지의 인민보안성까지 이송되었으며, 이들 중 3분의 1이 재판도, 비공식 선고도 없이 석방되었다.

¹¹⁸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11, 2007년 1월 29일.

¹¹⁹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10, 2007년 1월 22일.

이 보고서에서 인터뷰한 30명의 도강자들이 개별적으로 체포된 사건들은 모두 합해 50회인데, 30명 중 19명은 한번 체포되었었고, 5명은 두 번, 4명은 3번 체포된 적이 있으며, 한 명은 4번, 또 다른 한 사람은 5번 체포되었다.

50개의 사건 중, 오직 15건만이 일련의 사법적 판결로 이어졌으며, 이는 대다수인 70% 정도의 사건들이 공식적이건 아니건, 어떠한 형태의 판결도 받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아무런 형태의 선고도 없는 석방 중 약 절반 가량의 사건은 북한 당국자들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다른 사건들은 탈출, 뇌물, 질병, 사면으로 인해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표2)

놀라운 것은 북한이 허가 받지 않은 외국 여행의 금지를 포함해 주민을 심각하게 억압하는 반면, 행정 제도와 사법 체계는 아주 임의적이고 비논리적인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이어지는 강제 노동과 기타 형태의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처우에 직면함은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도강자들의 체포와 구금을 더욱더 심각한 문제로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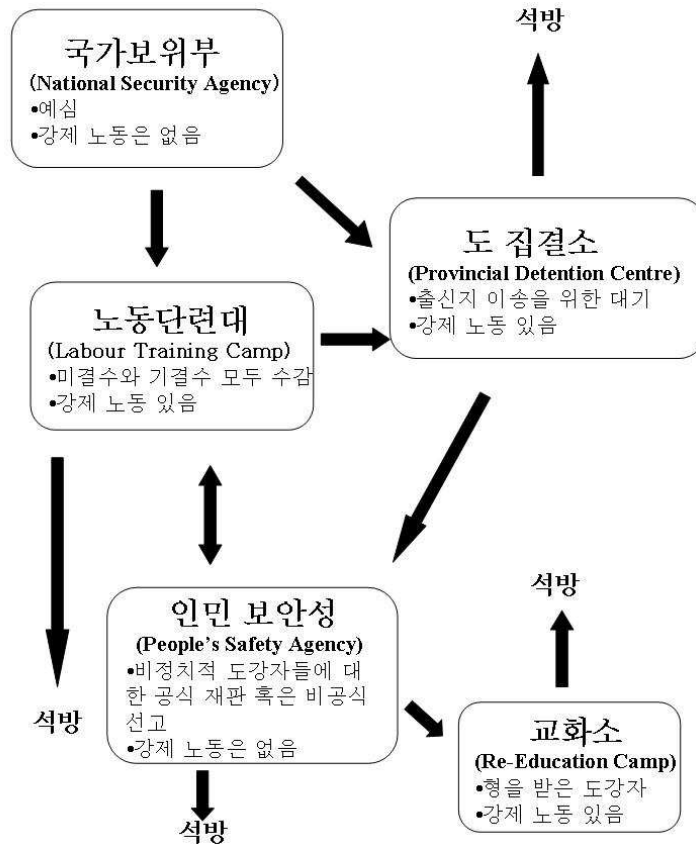
표 2: 선고 없이 석방된 35건

사유	건수
선고 없는 석방	14
탈출	7
뇌물	5
질병	5
사면	3
영아 동반	1

임의적 판결

예심과 이어지는 사법 절차에서 문제가 되는 측면은 판결의 임의적 성격이다. 국가보위부와 인민보안성이 도강자들의 범죄의 경중을 판단하는데 어떠한 판별기준을 사용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외관상 중죄(예, 남한으로 가려는 시도나 교회 출석)를 저질렀다고 자백했었던 일부 인터뷰 대상자들은 수용소형을 선고 받지 않고 석방되었다.¹²⁰ (그림 1)

그림 1: 북한의 형사 체계 내에서의 도강자 처벌 과정



더욱이 비슷한 조건의 사건들이 완전히 다른 판결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¹²⁰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12, 13, 2007년 1월.

회령 출신의 42세 여성과 온성 출신의 36세 여성은 모두 2005년 4월과 5월에 각각 처음으로 체포되었다. 두 여성 모두 중국인 농부와 결혼했고 자녀가 한 명씩 있었다. 두 여성 모두 국가보위부의 예심에서 중국인과 결혼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회령 출신 여성만이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했다. 그들은 보위부 요원들에게 구타를 당하지 않았다. 두 사건 모두 명백히 비정치적 도강으로 보이지만, 회령 출신 여성은 선고 없이 석방된 반면 온성 출신 여성은 재판을 받고 교화소 1년 2개월을 선고 받았다. 두 여성 사이의 구별할 만한 차이점은 회령 출신 여성이 오른팔이 없다는 것뿐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판결이 유리하게 났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실제로 회령 출신의 여성 자신도 자신의 장애가 석방의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이 “애초부터 사실대로 말했던 것”이 이유였다고 여겼다.¹²¹

교화소

도강자들은 법정에서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즉 출신지의 인민보안성에서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교화소에 구금될 수 있다. 2004년에 개정된 형법 233조에 따르면, 도강자들의 형기는 3년을 넘지 못한다. 실제로 이 보고서에서 인터뷰한 사람들이 2004년 이후에 받은 판결들은 6개월에서 14개월이었으며, 이는 1990년대 말에 내려진 형기들보다 훨씬 낮은 것이다.¹²² 교화소는 도강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역시 불법으로 간주되는 행위로 유죄를 선고 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따라서 수감자의 수는 다른 수용소들보다 훨씬 많으며, 일반적으로 1000명을 넘는다. 교화소에 도착한 후, 수감자들은 먼저 등록을 하고 그 다음 수의를 입고 머리를 자른다. 여성 수감자들은 머리를 5cm 길이로 자르고, 남성 수감자들은 머리를 민다.¹²³

¹²¹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7.9, 2007년 1월.

¹²²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29, 30, 2006년 2월 17일, 그리고 2007년 1월 23일.

¹²³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7, 2007년 1월 27일.

강제 노동

북한 당국에 따르면, 교화소에서의 처벌은 “범법자들이 죄를 뉘우치고 사회로 돌아가 법질서를 지키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함”¹²⁴ 이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노동과 교화를 통해 수감자들이 죄를 뉘우칠 뿐만 아니라, 고통을 당하는 과정에서 재범의 가능성을 줄인다는 것이다. 교화소의 일반적인 하루는 오전 6시에 시작된다. 아침 식사 후 수감자들은 작업을 배정 받은 곳으로 간다. 노동 시간은 작업과 시설마다 다르다. 파종기나 추수기에 수감자들은 점심 시간 30분만을 제외하고 해질 때까지 들에서 일을 해야 한다. 저녁 식사 후 최소 2시간의 교화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 그런 다음 밤 10시경 취침이 허락된다.¹²⁵

교화소의 강제 노동은 다른 어떤 수용소 보다 훨씬 강도가 세다. 열심히 일하지 않거나 하루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수감자는 경비원들에게 구타를 당한다.¹²⁶ 어랑 출신의 35세 여성은 2001년 1년형을 선고 받고 함경남도 용광의 55호 교화소에서 복역했다. 그녀는 원래 노동단련대 6개월을 선고 받았으나, 중국인 남편에게 중국으로 되돌아가고 싶다고 쓴 편지를 보내려다 들켜 두 배의 형기를 재선고 받고 교화소로 이송되었다. 교화소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몇 가지 차이점들을 보았다.

교화소에서의 생활은 더욱더 힘들었어요. 낮에 들에서 오랜 시간 일을 해야 했어요. 농사를 짓고 옥수수 밭과 콩밭에 비료를 줘야 했어요. 나는 구타를 당하지는 않았어요. 일을 안 했을 때만 매를 맞으니까요. 우리는 강냉이

¹²⁴ Second Periodic Repor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its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의 실행에 대한 북한의 제2차 정기 보고서) CCPR/C/PRK/2000/2, 2000년 5월 4일, p.22.

¹²⁵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7, 29, 30, 2007년 1월과 2006년 2월 17일.

¹²⁶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30, 2007년 1월 23일.

밥과 소금 국을 먹었어요.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고 살아남는 건 불가능했어요. 영양 실조로 죽은 사람들도 있었어요.¹²⁷

음식

수감자들은 그들이 해야 하는 노동의 양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빈약하게 배급되는 식량으로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을 안다. 몇몇 인터뷰에서 빈번하게 표현되는 정서는 그들이 언제나 배가 고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풀, 소나무 이파리, 나무 껍질과 같은 대체 식량을 찾아 다닐 수 밖에 없었으며, 그러한 것들은 이미 약해진 소화기관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었다. 어랑 출신 여성이 언급한 것처럼 수감자들, 특히 끼니를 보충할 영양가 있는 수단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영양실조로 죽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2005년-2006년에 중산의 교화소에 있었던 어랑 출신의 36세 여성은 절박한 식량 상황과 이에 따른 생존의 시도들을 설명했다.

식사 시간에 우리는 비지, 옥수수껍질 밥, 썩은 양배추 국을 먹었어요. 우리가 하는 노동의 양에 비해 충분하게 먹은 적은 결코 없었어요. 다른 것들로 끼니를 보충해야 했어요. 감옥에서는 누구도 위생이나 음식의 종류에 대해 불평을 할 수 없었어요. 풀, 개구리 등 모든 것을 먹었어요.¹²⁸

의료

교화소에는 병반과 간병원이 갖추어져 있지만, 시설이 너무 형편없어서 수감자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다. 다른 수용소들과 마찬가지로 환자들에게 투여할 약품이 없다. 따라서

¹²⁷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8, 2007년 1월 21일.

¹²⁸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7, 2007년 1월 27일.

치료를 해주지 못하므로 많이 아픈 사람에게는 그저 노동을 면제시켜 줄 뿐이다. 중산 교화소에 수감되었던 탈북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교화소에는 병반이 있었지만 약이 없었어요. 그래서 간병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병을 진단하는 것뿐이었고, 만일 심각한 병이면 누워서 휴식을 취하라고 말했어요. 환자에게 누룽지를 줌 먹으라고 줄 수는 있었지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어요.¹²⁹

7. 다시 중국으로

도강자들이 행형 제도로부터 풀려나기 전, 일반적으로 중국으로 되돌아가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각서에 서명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집으로 보내지며, 그곳에는 인민보안성에서 나온 보위원이 배치된다. 이들의 주요 임무는 도강자의 이동을 감시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매일 도강자의 집을 방문하고 중국으로 다시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포함된다. 중국으로 다시 가고 싶은 도강자는 당국자들에게 뇌물을 주거나, 혹은 (당국자들이 근무를 하지 않는) 공휴일을 기다렸다가 중국으로 다시 들어간다.¹³⁰

중국으로 돌아가는 이유

석방이 된 도강자들은 북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맞닥뜨린다. 가장 힘든 것은 경제적인 문제이고, 이것이 그들이 떠나도록 만드는 첫 번째 이유이다. 식량은 여전히 부족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미 바닥에 이른 가정 형편이 자신 때문에 더욱 어려워진다고 느낀다. 일부는 자신을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북한에 남아 있지 않으며 이는 노인들의

¹²⁹ Ibid.

¹³⁰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11, 12, 13, 2007년 1월.

경우 특히 우려스러운 일이다.¹³¹ 실업률이 매우 높은 북한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과 관련한 일반적인 어려움에 더해, 도강자들은 또한 차별의 대상이기도 하다.

도강자들을 향한 강한 부정적 태도가 존재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강자들을 “변절자”로 취급한다. 이는 편견, 괴롭힘, 공개적인 모욕을 통해 드러난다.¹³² 한 여성은 시장에서 음식을 파는 예전의 직업으로 돌아갔지만 그녀가 불법 도강자라는 이유로 아무도 그녀에게서 음식을 사지 않았다.¹³³ 2005년 12월 회령 노동단련대에서 석방된 한 여성은 그녀가 겪어야 했던 공개적인 모욕을 설명했다.

처음엔 북한에서 딸과 함께 살려고 애썼어요 [...] 하지만 내가 도강을 했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공개적인 모욕을 받아서 살 수가 없었어요. 나는 마을 한 가운데서 열리는 자아 비판에 참여해야 했어요. 그들은 나를 모든 사람 앞에 세워서 사람들이 나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게 했어요. 너무도 모욕적이었어요. 2006년 3월, 결국 딸을 데리고 다시 중국으로 갔어요.¹³⁴

일 자리를 찾을 수 없었고 집에 먹을 것이 없었던 온성 출신 여성은 북한에 머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녀의 행동이 가족에게 미친 결과를 나중에 알았다.

내가 떠난 후, 온성의 마을 사람들이 내가 중국으로 갔다는 이유로 나의 어머니를 괴롭히고 모욕했대요. 내 어머니는 거기서 계속 살기가 어렵다는 걸 알고 떠났어요. 그리고 지금은 내 여동생과 함께 강원도에 살아요.¹³⁵

¹³¹ 1990년대 중반 식량 배급 체계를 통한 식량 배급이 붕괴된 이후, 북한 주민들 대부분은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¹³² 이금순, *op. cit.*, p.11.

¹³³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23, 2007년 1월 26일.

¹³⁴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3, 2007년 1월 23일.

¹³⁵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7, 2007년 1월 27일.

마양 출신의 또 다른 여성은 2005년 8월 중국으로 되돌아가기로 결심했고 거기서 조선족 가정의 가정부 겸 보모 일자리를 찾았다. 그녀의 결정 역시 그녀의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내가 중국에 있으니 우리 아이들이 북한에서 괴롭힘을 당해요. 아이들이 좋은 옷을 입으면, 그 옷이 중국에서 온 것이라며 이웃들이 우리 아이들을 비아냥거리요. [...] 한 아이가 북한을 떠나면 남아있는 다른 아이들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북한을] 못 떠나요. 왜냐하면 내가 불법 도강자로 등록돼 있으니까요.”¹³⁶

다른 도강자들은 중국에 가족이 있고, 그들을 포기 하고 싶지 않아서, 특히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다시 그곳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느낀다.¹³⁷

재 체포의 두려움

중국에서 인터뷰한 사람들이 표현한 공통적인 두려움은 다시 체포되는 두려움이다. 먹을 것은 충분하지만, 계속되는 체포와 송환의 두려움 때문에 중국에서의 삶은 여전히 힘들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불안감이 그들을 떠나지 않으며 중국에서의 삶이 절대로 안전하게 느끼지 않는다고 말한다. 2001년 4월 출신지의 노동단련대에서 석방된 온성 출신의 43세 여성은 그 해 10월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다. 그 때 이후 그녀는 너무 두려워서 절대 마을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그녀의 설명은 많은 탈북자들이 끊임없는 공포 속에서 살고 있음을 보여준다.

¹³⁶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24, 2007년 1월 23일.

¹³⁷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9, 16, 2007년 1월.

나는 언제나 문을 잠가 둡니다. 특히 밤에 무슨 소리가 들리면 나는 겁이 나요. 정말이지 신경이 곤두서요. 불안감만 아니라면 중국에 기꺼이 남아 있겠어요. 하지만 남한이 더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지요.¹³⁸

이러한 공포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보고서를 위해 중국에서 인터뷰한 탈북자들 중 25명은 한 번 이상 체포된 적이 있으며 다음 번에 체포되어 송환되면 더욱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2006년 7월 교화소에서 석방된 온성 출신 여성은 또 한 번 재 송환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중국에 머물고 싶지만 다시 체포될까봐 두려워요. 다음 번에 잡히면 사형 당할 지도 몰라요. 그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난 알아요, 다시 잡히면, 자살해야 할 거예요.¹³⁹

대부분의 인터뷰 대상자들은 대체로 중국에서 계속 사는 것에 그런대로 만족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북한과 가깝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는 불안함, 그리고 말과 행동을 끊임없이 조심해야 하는 것 때문에 중국에서 사는 것 역시 너무 힘이 든다고 말한다. 남한에 들어온 탈북자들에게 국적을 부여하고 있는 남한 정부의 정책은 중국에 있는 이러한 탈북자들에게 그들이 간절히 바라왔던 것, 즉 법적 지위를 보장해 준다. 합법화를 통해 도강자들은 “공포 없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경성 출신의 한 탈북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북한에 있을 때 보다는 중국에서 더 잘살지만, 때로는 남한으로 가는 게 더 나을까 하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남한으로 가면 남한 국적을 갖게 되니까요.

¹³⁸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27, 2007년 1월 25일.

¹³⁹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7, 2007년 1월 27일.

남한에서는 무슨 말을 할 때 조심하지 않고 언제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을 테니까요.¹⁴⁰

현장 난민 (Refugees sur Place)

대다수의 탈북자들이 식량이나 경제적 이유로 인해 북한을 떠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여행이라는 점 때문에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한 두려움을 낳는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현장 난민(refugees sur place)으로서 국제적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는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인 비딧 문타폰(Vitit Muntarbhorn)이 인정한 사실이다. 2007년 유엔총회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문타폰 교수는 “굶주림과 기타의 박탈”로 인해 자신의 나라를 떠난 북한 주민들이 일반적으로는 난민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나

[...] 요구되는 출국 비자 없이 자신의 나라를 떠났다는 것을 근거로 자국으로 돌아갔을 때 박해/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 현장 난민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가 많다.¹⁴¹

고 인정했다.

송환된 탈북자들이 수용소에서 강제 노동, 구타, 기타 모욕적인 처우 및 처벌을

¹⁴⁰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 사례 26, 2007년 1월 29일.

¹⁴¹ Vitit Muntarbhorn,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보고서), A/HRC/4/15, 2007년 2월 7일, p. 9., 20절.

받으리라는 것은 이 보고서 및 다른 여러 보고 문서에서 나타나는 의심할 바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8. 결론

북한은 중국으로 가는 모든 북한 사람들이 정치적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최근 수년간 도강자들에 대한 처벌을 완화시켜왔다. 그 결과 도강에 대한 처벌은 1999년에 징역 최대 3년에서 2004년 최대 2년으로 줄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은 국가의 허가 없이 자국을 떠났다는 이유로 도강자들을 체포하고, 처벌로서 강제 노동을 부과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믿는다. 그러한 법은 북한 주민의 이동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훼손하며, 도강자의 절대 다수가 식량 부족과 경제 위기에 직면하여 단지 생존을 도모하고 보장 받기 위해 이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부적절하다.

이 보고서에서 보여지고 있는 수용소에서의 강제 노동은 북한 정부가 가입한 협약들, 그리고 국제적, 국내적으로 제시된 기준에 위반하는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강제 노동을 “징벌의 위협을 통해 이끌어낸, 그리고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모든 노동과 서비스”로 정의한다.¹⁴² 강제 노동은 또한 북한이 비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8조에 금지되어 있다. 구금 시설에서 강제 노동을 사용하는 것은 오로지 그것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법정에 의해 그러한 처벌을 이행”하는 것이거나 혹은 “법원의 합법적 명령의 결과”일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¹⁴² ILO(국제노동기구), Convention No. 29 concerning Forced or Compulsory Labour(ILO 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2조 1항. <http://www.ilo.org/ilolex/cgi-lex/convde.pl?C029>

도강자들이 유죄 판결 없이 구금되어 강제 노동에 처해지는 만큼, 도강자들과 관련한 절대 다수의 사건은 그러한 예외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보고서의 인터뷰들은 판결 없이 구금된 사람들이 평균 약 50일간 강제 노동에 처해졌음을 보여준다. 긴 노동시간,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일들, 불충분한 음식, 물 그리고 의료적 관점에서 이러한 강제노동이 실행되는 환경들 또한 구금자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안티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Antislavery International)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북한 정부는 허가 없이 북한을 떠나는 것이 범죄에 해당되지 않도록 형법을 수정하고, 국내외 여행을 위한 여행 증명서의 요구를 폐지하라.
- 북한 정부는, 국제적 그리고 국내적 의무를 준수하여, 수용소에서 강제 노동의 사용을 중단하고, 미결 구금자들이 강제 노동을 행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
- 북한 정부는 유엔 특별보고관이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도록 초청하고, 특히 수용소의 실태를 철저히 점검할 수 있도록 협력하라.
- 중국 정부는 미등록 북한 이주자들(탈북자)의 강제 송환을 중단하고, 북한 정부가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은 현재의 도강자 처우를 개선할 때까지 미등록 북한 이주자들을 현장 난민(refugees sur place)으로 인정하라.
- 중국 정부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UHCR)이 중국 내 탈북자들에게 접근하도록 허용하여 탈북자들의 개별적 상황을 평가하고 그들의 상황에 대한 안전하고 영구적인 해결책을 추구할 수 있게 하라.
- 지역 및 국제사회의 정부들은 가능한 최단 기간 안에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책임 있는 정부들 및 범 정부 기구들과의 모든 적절한 만남에서 위의 문제들을 제기하라.

9. 인터뷰 대상자 신상 및 추방/수감 횟수

사례 1

성별: 여성

나이: 32세

출신: 함경북도 길주

추방/수감 횟수: 1회 (2006년)

인터뷰: 2007년 1월 26일, 중국

사례 2

성별: 여성

나이: 43세

출신: 함경북도 청진

추방/수감 횟수: 1회 (2005년/2006년)

인터뷰: 2007년 1월 22일, 중국

사례 3

성별: 여성

나이: 38세

출신: 함경북도 회령

추방/수감 횟수: 1회 (2005년)

인터뷰: 2007년 1월 23일, 중국

사례 4

성별: 남성

나이: 21세

출신: 함경북도 무산

추방/수감 횟수: 4회 (2005년, 2003년, 2002년, 1998년)

인터뷰: 2007년 1월 21일, 중국

사례 5

성별: 남성

나이: 27세

출신: 함경북도 무산

추방/수감 횟수: 5회 (2005년/2006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0년)

인터뷰: 2007년 1월 28일, 중국

사례 6

성별: 여성

나이: 41세

출신: 함경북도 회령

추방/수감 횟수: 3회 (2005년, 2004년, 2003년)

인터뷰: 2007년 1월 27일, 중국

사례 7

성별: 여성

나이: 36세

출신: 함경북도 온성

추방/수감 횟수: 1회 (2005년/2006년)

인터뷰: 2007년 1월 27일, 중국

사례 8

성별: 여성

나이: 35세

출신: 함경북도 어랑

추방/수감 횟수: 3회 (2005년, 2002년, 2000년/2001년)

인터뷰: 2007년 1월 21일, 중국

사례 9

성별: 여성

나이: 43세

출신: 함경북도 회령

추방/수감 횟수: 1회 (2005년)

인터뷰: 2007년 1월 25일, 중국

사례 10

성별: 여성

나이: 38세

출신: 함경북도 어랑

추방/수감 횟수: 1회 (2005년)

인터뷰: 2007년 1월 22일, 중국

사례 11

성별: 여성

나이: 30세

출신: 함경북도 경성

추방/수감 횟수: 1회 (2004년)

인터뷰: 2007년 1월 29일, 중국

사례 12

성별: 여성

나이: 41세

출신: 함경북도 청진

추방/수감 횟수: 1회 (2004년)

인터뷰: 2007년 1월 29일, 중국

사례 13

성별: 여성

나이: 68세

출신: 함경남도 서상도

추방/수감 횟수: 2회 (2004년/2005년, 2003년)

인터뷰: 2007년 1월 28일, 중국

사례 14

성별: 여성

나이: 47세

출신: 함경북도 회령

추방/수감 횟수: 4회 (2004년, 2003년, 2001년, 1998년)

인터뷰: 2006년 2월 11일, 한국

사례 15

성별: 남성

나이: 27세

출신: 평양

추방/수감 횟수: 1회 (2003년)

인터뷰: 2007년 2월 12일, 한국

사례 16

성별: 여성

나이: 42세

출신: 함경북도 회령

추방/수감 횟수: 1회 (2003년)

인터뷰: 2007년 1월 27일, 중국

사례 17

성별: 여성

나이: 47세

출신: 함경북도 무산

추방/수감 횟수: 1회 (2003년)

인터뷰: 2007년 2월 10일, 한국

사례 18

성별: 여성

나이: 36세

출신: 함경북도 유선

추방/수감 횟수: 1회 (2003년)

인터뷰: 2007년 1월 26일, 중국

사례 19

성별: 여성

나이: 48세

출신: 함경북도 무산

추방/수감 횟수: 1회 (2002년)

인터뷰: 2007년 1월 28일, 중국

사례 20

성별: 여성

나이: 57세

출신: 함경북도 청진

추방/수감 횟수: 2회 (2002년, 2001년)

인터뷰: 2007년 1월 25일, 중국

사례 21

성별: 여성

나이: 28세

출신: 함경북도 온성

추방/수감 횟수: 3회 (2002년, 2000년, 1999년)

인터뷰: 2007년 1월 29일, 중국

사례 22

성별: 여성

나이: 32세

출신: 함경북도 온성

추방/수감 횟수: 2회 (2002년, 2001년)

인터뷰: 2007년 1월 29일, 중국

사례 23

성별: 여성

나이: 35세

출신: 함경북도 승암

추방/수감 횟수: 2회 (2002년, 2001년)

인터뷰: 2007년 1월 26일, 중국

사례 24

성별: 여성

나이: 58세

출신: 함경북도 마양

추방/수감 횟수: 1회 (2001년)

인터뷰: 2007년 1월 23일, 중국

사례 25

성별: 여성

나이: 35세

출신: 함경북도 은덕

추방/수감 횟수: 1회 (2001년/2002년)

인터뷰: 2007년 1월 25일, 중국

사례 26

성별: 여성

나이: 63세

출신: 함경북도 경성

추방/수감 횟수: 1회 (2001년)

인터뷰: 2007년 1월 29일, 중국

사례 27

성별: 여성

나이: 34세

출신: 함경북도 온성

추방/수감 횟수: 1회 (2001년)

인터뷰: 2007년 1월 25일, 중국

사례 28

성별: 여성

나이: 52세

출신: 평양

추방/수감 횟수: 2회 (2000년, 1999년)

인터뷰: 2005년 2월 12일, 한국

사례 29

성별: 남성

나이: 25세

출신: 함경북도 청진

추방/수감 횟수: 1회 (1998년)

인터뷰: 2006년 2월 17일, 한국

사례 30

성별: 여성

나이: 49세

출신: 함경북도 회령

추방/수감 횟수: 1회 (1997년)

인터뷰: 2007년 1월 23일, 중국

Anti-Slavery International, founded in 1839, is committed to eliminating all forms of slavery throughout the world. Slavery, servitude and forced labour are violations of individual freedoms, which deny millions of people their basic dignity and fundamental human rights. Anti-Slavery International works to end these abuses by exposing current cases of slavery, campaigning for its eradication, supporting the initiatives of local organisations to release people, and pressing for mor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s against slavery. For further information see: www.antislavery.org



Registered charity: 1049160 Anti-Slavery International
Thomas Clarkson House, The Stableyard
Broomgrove Road, London SW9 9TL
Tel: +44(0)20 7501 8920 Fax: +44(0)20 7738 4110
e-mail: info@antislavery.org
www.antislavery.org